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9 7·8 Vol.83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시론 한예종 사태의 진실과 거짓말  
민변의 활동 월례회 정세현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특별연재 조선총독부에 대한 항의문-김병로 변호사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tel (02) 522-7284 fax (02) 522-7285  
homepage www.minbyun.org blog http://minbyun.org/blog/  
e-mail info@minbyun.org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행일 2009년 8월 10일  
 발행인 백승헌  
 편집인 채영호  
 편집위원회 황희석·김도형·김영준·김진·정은경·좌세준·이경은·황혜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전자우편 info@minbyun.org  
 값 5,000원  
 디자인·편집·인쇄 디자인랩(02-739-9957)

바로잡습니다 지난 5·6월호(Vol.82) 28면 사법 제대로 보기 코너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을 보며'의 필자는 '태안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소송 공동대리인단' 이 맞습니다.

칼럼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_민경한 2  
 초점 노무현 관련 검찰개혁 문제 평가  
 산으로 가는 배 \_김희수 8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_이준일 18  
 검찰개혁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 \_정리: 편집위원회 26

사법 제대로 보기 에버랜드 판결 유감 \_장덕조 28

법률 바로세우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_정리: 입법감시 TFT 36

시론 한예중 사태의 진실과 거짓말  
 - U-AT 통섭교육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_심광현 40

법률참고 사형제 구두변론 48  
 국정원 손해배상 판결 62

특별연재 조선총독부에 대한 항의문 - 김병로 변호사 \_한인섭 72

민변의 활동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 정세현, 7월 민변월례회 \_정리: 김영준 80  
 공부모임: 『유러피언 드림』 \_정리: 좌세준 98

회원이야기 로스쿨과 제주 이야기 \_박선아 108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_정병욱 111  
 민변 회원들의 새 책 \_정리: 김진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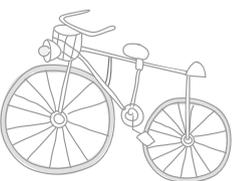
행사후기 민변 총회 \_성상희 116

인턴이야기 환경위 태안문제 \_이겨라 119

성명 및 논평 122

정기구독안내 128

표지의 제자는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삽화는 김현경님과 유수연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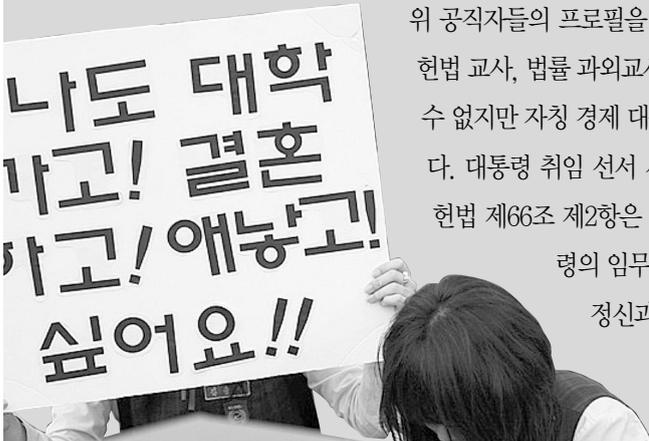
# MB정권의 법치주의의 현 주소

글 \_민경한 회원

법치주의의 확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가 뿌리를 내려야 하고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하면서 법치질서의 확립을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았으나 현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법의 이름을 앞세워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매화 하는 것 같아 몹시 우려된다.

애초에 현 정권에 법치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위기를 해소하라고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도 없는 건설회사 CEO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가 잘못이다. 한 번의 위장전입으로 총리, 장관 등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중도 하차하였다. MB는 수차례의 위장전입, 자녀와 운전기사의 위장 취업, 탈세의 위법행위를 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도곡동 땅 사건이나 BBK 사건을 보면 대통령의 법치의식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애초에 법치를 실현하고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할 자격이나 의식이 없는 것이다. 집권 후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나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보

면 MB 정권 사람들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는지 의문이 간다. 역대 고위 공직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는 많던데 대통령의 헌법 교사, 법률 과외교사를 했다는 경력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인정할 수 없지만 차칭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니 경제 과외 교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선서 시 여러 의무 중 헌법 준수 의무가 제일 먼저이고,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잘 알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 위법 행위를 많이 하였고 헌법이나 인권에 무지하고 법치



질서를 유린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MB에게는 헌법과 법률 과외교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현 정권은 국민을 우매화하고 무시하며,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충복으로서 영혼을 팔고 있다. 정부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전혀 없는 대운하(4대강 살리기)를 하던, 국가안보와 안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던,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재벌과 신문사에 방송을 허용하는 미디어 법을 개정하던,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졸속으로 협상하여 수입하던, 추천도서인 『나쁜 사마리안들』을 포함한 금서 목록을 만들어 군인들이 소지나 독서를 못하게 하던 간에 모든 국민들은 귀막고 입 닫고 용비어천가만 읊조리며 정부 정책에 박수치고 찬양하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인가. 현 정권은 우매한 국민들이 인권과 법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촛불 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방송 보도를 하고, 헌법 소원을 하고, 반대 토론을 하며 시국 선언을 하고, 정부정책을 비판, 감시하고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 한일합방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지식인을 탄압하고, 유신시대에 대통령과 유신헌법,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고문하고 투옥하던 암울했던 시대가 다시 도래 하는 것 같다.

지난 정권 때 안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므로 제2롯데월드는 절대 불가하다는 수십 쪽 분량의 보고서를 쓴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활주로를 조금만 변경하면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고, 고교, 대학 추천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여 소지나 독서를 금지하자 법을 전공한 법무관들이 헌법상의 권리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2명의 법무관을 파면한 국방부 고위관리들, 지난 정권 때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데도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며 협상을 진행중이었는데 현 정권에서는 연령 제한도 없이 뼈, 창자까지 수입을 쉽게 허용하며 졸속으로 협상을 마쳐버리는 영혼을 파는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현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법치의식이나 인권의식을 몇 십 년 후퇴시키며 인권보호에 역주행하고 있다. 전혀 필요치도 않는 4대강

애초에 현 정권에 법치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위기를 해소하라고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도 없는 건설회사 CEO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가 잘못이다. 한 번의 위장전입으로 총리, 장관 등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중도 하차하였다.



살리기에 22조원(숨은 사업과 예산이 있다고 하니 얼마가 추가될지 모르겠다)을 낭비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짧은 기간에 인권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였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민변, 참여연대, 국회의원실, 민주노동당 등 2,000여개의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포함시켰는데, 그 기준도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촛불시위 참여단체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지난해 7월 MBC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와 정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 보수단체의 경우 단체 회원이 기소되고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이 목록에서 빠져있다. 또 정부 법무공단에서는 작년에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을 공단 변호사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공단 이사장과 정부의 마찰 끝에 이사장이 중도퇴임하고 변호사 7명이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진보적인 시민단체에 후원까지 못하게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아예 시민단체의 싹을 자르고 국민을 귀머거리, 병어리로 만들 모양이다.

6월 항쟁, 2002년 월드컵, 탄핵 정국,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소통과 표현의 장이자 놀이 마당이었던 서울 광장을 단지 폭력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편협한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가장한 반 법치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임원들 중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거나 개혁성향의 사람들을 선정해 여러 경로로 사임을 강요하다가,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감사를 해 그 결과를 부풀려 언론에 누설하고, 그래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무리해서 사임시키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한다. 모든 부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특히 용식(전원일기)에서 갑자기 장관이 되어 인권의식이 희박하고 충성파인 유인촌이 장관으로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심하다.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현 전 위원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전 관장, 한국예술중



합학교 황지우 총장이 대표적이다.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 기관장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기관장들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특히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법 25조 5항). 정권 교체를 이유로 능력과 무관하게 외압을 가하면서 사표를 제출케 하는 것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국가권력의 남용과 탈탈이다. 압박에 의해 강제로 사임한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취소 소송 3건을 진행, 준비 중인데 그 방법이 너무나 치사하고 졸렬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텔런트 출신의 장관답게 '대한 누우스-4대강 살리기'라는 기발한 홍보물을 제공하고 막말을 많이 하여 국민들에게 코메디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직후 청와대 대변인과 한나라당 초선 의원 40명이 MBC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검찰은 수사 발표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자세히 공개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기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유, 무죄도가 그려지지 않았는데 수사 발표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이다. 청와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검찰의 혐의사실 발표를 근거로 언론사 경영진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검찰이 피고인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의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PD수첩 사건의 주임검사인 20년 경력의 부장검사가 처벌 가치가 없다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의견 대립으로 사표를 낸 것을 보면 검찰 수뇌부의 법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이 최근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의 압수 수색과 공개에 이어 시국 선언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야당 후보였던 주경복의 7년간의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검찰은 진정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압수 수색의 대상이나 범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치우침 없이 공정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후보였던 공정택 당선자는 단 1년분이라도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였는지, 시국선언을 한 단체가 뉴라이트 계열이나 보수적인 단체였어도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을까.

작년 촛불집회 때 연행된 사람들이 1,600명, 구속된 사람들이 50명이며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600여명인데 경찰로부터 폭력 또는 불법체포 당한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경찰의

현 정권은 법치 질서를 가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토건 사회의 마인드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IT 시대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방 통행식 사고에 젖어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어 살 맛이 나지 않는다.



폭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 20여 건은 형식적인 고소인 조사만 한 차례씩 진행되었을 뿐 폭력을 직접 행한 전, 의경이나 그 지휘관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 편의주의 전형적인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얼마 전 작년 촛불집회 때 유모차를 끌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던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한심한 경찰이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마저 “검찰의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개 문제의 잘못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충고를 하였는데 검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할 최후의 보루는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나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판결에서 보았듯이 법원에게 법치 구현의 최후의 보루라는 희망을 거둔 지 오래되었다.

검찰은 실망을 넘어 개탄,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과 언론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고, 요사이 검찰 개혁이 최대 화두다. 오죽하면 물으려면 물고, 물지 마라면 물지 않는 견검(犬檢), 검색이라는 치욕적인 말들이 회자되는지 검찰은 깊이 음미해 보고 개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검찰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이나 재벌을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엄정하게 법치 질서를 확립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표적, 보복수사에 앞장선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정말 암담하다. 검찰은 지금 군사 독재시절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군사 독재시절엔 그래도 반체제인사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나 긴급조치 위반을 적용하여 대상이나 적용 법률이 다 알려지고 단순하고 순진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여



방어전선도 구축하기가 쉬웠고 민주주의의 쟁취라는 큰 목표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은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정권 편향적인 수사가 더욱 확대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있는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검찰,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나는 2007년과 2008년 제4기, 5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현 정부 취임 이후 작년 9차례 회의(1회 때 2개의 안건을 처리함)동안 4개의 안건이 법질서 확립과 준법외식에 관한 것이었다. 법질서란 하위 질서와 상위 질서(내가 편의상 분류한 것인데 용어가 적절하지 모르겠다)가 있는데 법질서하면 도로나 거리질서, 집회 및 시위 질서 등 하위 질서에만 국한하여 다루지 말고 훨씬 영향력이 크고 준법의식이 필요한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 행정질서 등 상위 질서에 있어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언론, 지성인 등 화이트 칼라의 법질서 확립과 준법외식 고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해 보자고 건의하고 평가한 적이 있었다. 정부에서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빙자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파업이나 시위, 집회 등을 억압하고 이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 거래질서,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과 위법 실태, 선거나 인사, 언론, 수사 질서 등 훨씬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클 법치질서 확립에 치중해야 한다.

현 정권은 법치 질서를 가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토건 사회의 마인드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IT 시대의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아직도 일방 통행식 사고에 젖어 있어 국민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고,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어 살 맛이 나지 않는다. 남은 3년 남은 너무나 긴데 어떻게 견딜까를 생각하면 정말 앞날이 암담해진다.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질수록 민변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기대도 높아졌고, 민변이 할 일도 많아진 것 같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민주 공화국 대통령답게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토건 국가식 사고는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란다. 법치 질서 확립은 거창한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

# 산으로 가는 배\*

글 \_ 김희수 회원



## 1. 검찰의 존재 이유

배가 올바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공통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배가 정확한 목표설정을 하지 못하고, 승무원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배는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릴 수도 있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제대로 법적용을 하면 사회정의는 실현 될 수 있지만 거꾸로 검찰이 법적용을 잘못하게 되면 사회정의를 해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배가 강으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가는 결과와 같다.

그래서 검찰이 하는 법적용은 대단히 중요하며, 비록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엄격하게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조직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인권을 화두로 말하던 경찰과 검찰이 현 정부 들어서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는 모습으로 돌변했다. 참여정부 시절 조금이라도 민주화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경주하는 듯 보이던 권력 기관들이 지금은 국민을 괴롭히는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들 권력 기관이 참여정부 시절 취하던 국민과 인권에 대한 일련의 태도들이 '악어의 미소'이었음을 능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정의의 칼'은 잘못 휘두를 경우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서로가 불행한 일이며, 서로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간디가 말한 것처럼 "법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신중하게 위험한 물건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비판·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와 구속, 기소 등이 거의 일상처럼 반복·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위험한 물건인 법률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적용, 광우병 위험 관련 MBC <PD수첩> 방영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과 작가의 e-메일 공개, 네티즌들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 적용, 세금소송에 있어 법원 중재를 수용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외 그 이후 수사기록 미공개 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검

찰의 수사 및 공소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권 행사의 궁극적 의의는 국민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 원칙이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헌법적 원리이다. 검찰 또한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민을 보호할 본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부 조직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권 행사가 혹시 지난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 그러한 것처럼 행정부의 권력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과 법원 등의 사법관계자들이 권력자와 강자에게 봉사하고, 이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권력행사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법관계자 98% 이상이 불철주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2%에 속하는, 딱 2%에 해당하는 사법관계자들의 정치적 행태 등 때문에 불공정 수사 및 재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2%에 해당하는 검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전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검찰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분들은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할 일을 했다는 식의 위풍당당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말 검찰의 말과 행동처럼 위풍당당해도 좋은 것인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 검찰권 통제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 2. 현 정부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 사례

### 가. 촛불 집회·시위 사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를 내세우며 어린 학생들에 의하여 촉발된 '촛불시위'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불길처럼 번져 나가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 본고는 2009. 5. 12.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 주최로 개최된 '20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검찰, 이대로 좋은가'에서 필자가 "검찰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던 원고 내용을 수정·삭제·보완한 내용임

참여연대와 민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폭력

또는 불법체포 등을 당한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은 20여 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밝히면서 두 번에 걸쳐 국민에게 사과를 하였다.

이후 촛불 시위가 소강국면에 들어서자 검·경이 '법치주의'<sup>1)</sup>를 내세우며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을 배후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체포·구속·기소하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참여연대의 '경찰의 촛불 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4일 기준 총 64명이 구속되고 체포자만 1,500명에 이른다고 한다.<sup>2)</sup> 아마도 본인 기억으로는 단일 시위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 적용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속칭 '건국대 사태'<sup>3)</sup>에 버금가는 규모로 '공안정국 회귀', '신공안정국'이라는 말이 정확한 현상 진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폭력 또는 불법체포 등을 당한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은 20여 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소여부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고소장이 제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고소인 조사만 한 차례씩 진행했을 뿐,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전의경이나 그 지휘관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sup>4)</sup> 이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가 갖는 전형적인 단점, 즉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공소권행사가 검사의 자의와 독선으로 실시될 경우 '검사파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사과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가장 원초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 총대를 메고 해결사 노릇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촛불집회와 이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하여 정부는 일관되게 불법·폭력 시위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장과 달리 국제엠네스티는 2008년 10월 6일자 보고서를 통해 시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고, 시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주목할 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정부의 불법·폭력 시위 주장을 반박하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지적할 수 있는 사례로 촛불자동차연합 사건을 들 수 있다. 촛불자동차연합은 지난 2008년 7월1일 시국미사 및 법회 기간 중에 개설되어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활동한 카페로서, 차량 시위대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참여, 촛불행렬의 후방을 일반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집회 현장의 교통정리 등 평화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교통경찰관과 협의하였고,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는데도 경찰은 지난 해 9월 30일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및 비회원 25인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일반교통방

해와 집시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였다. 이들은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sup>6)</sup>

위 카페와 대조적으로 6월 중순 경 고엽제 전우회의 각 지부차량 100여대가 서울 시내 중심가를 시속 5km 이하로 운행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차량에 LPG가스통을 매달고 운행한 사실을 상기해 보자. 검·경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 두 사례 비교를 통해 검·경의 자의적이며 독선적인 법집행의 문제점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sup>7)</sup>

### 나. 용산참사 사건

2009년 1월 20일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남일당 상가 빌딩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경찰특공대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 농성 자들에 대하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경찰에게는 철거민 5명의 사망 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1) 법률신문, 2009. 4. 27.자 보도에 따르면 법률신문이 주최한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결과 법률가 10명 중 6명이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하였다.

2) www.peoplepower21.org

3)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생이 건국대학교에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농성을 하던 학생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1,525명을 연행하고, 이중 1,298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이중 877명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나, 398명이 구속 기소됨으로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4) http://www.peoplepower21.org

5) http://www.amnesty.or.kr

6) 시사 IN, 앞 주간지, 28쪽 - 촛불자동차연합회원 25명이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효력정지기처분 결정을 낸 4명은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고, 대부분의 사건은 행정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다.

7) http://cafe.daum.net/TuningOfKorea

용산참사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① 망루의 화재가 농성자들이 불붙인 화염병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여부와, ② 공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의율하였는데,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등이다.



마땅히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의 자진 하강 유도, 위험물질의 소진 및 제거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비좁은 공간에 인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강제해산 시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을 소지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농성자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넣는 공격적 진압방식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전에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 투입 진압작전 결정을 내렸고,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 없이 다량의 인화성 위험 물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옥상 망루 위의 농성자 등을 상대로 토끼몰이 방식의 진압작전을 강행하였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공간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다량의 인화물질 및 유류화재에 대한 안전대비 없는 강경진압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권력 행사시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였다는 의심을 지워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용산참사 사건에서<sup>8)</sup> 가장 첨예한 쟁점은 ① 망루의 화재가 농성자들이 불붙인 화염병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여부와, ② 공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의율하였는데,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등이다. 위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담당 검



사에게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09년 3월 26일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가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람·등사 거부 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이어 3월 27일 열람·등사 거부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 4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위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은 수사서류 약 3,000페이지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상 교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재판은 파행상태에 놓여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를 검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개시하지 않은 이 사건은, 후일 준엄한 역사의 책임과 함께 법적·윤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제되지 않은 권력, 권력의 오만함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가를, 위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사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사건을 수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일 각 도하 신문에 그 내용을 둘러싸고 대서특필되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을 압박하기 위하여 장녀를 소환 수사하고, 3명의 딸을 출국금지까지 시켰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전주곡으로서의 박회장에 대한 수사는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 존재한다. 독재정권 시절 자백을 강요하면서 자백하지 않은 경우 물리적인 고문 등을 자행하였고, 여의치 않으면 가족들을 끌고 와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가족만을 제발 손대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 박회장의 가족들을 끌어들이어 가족들에 대한 수사증거 또는 불처벌의 대가로 진술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자백배제 법칙을 검찰이 위반한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 시대의 위법한 수사와 박회장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질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 247(병합)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

스스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할 자질이 없다면,  
그리고 과오를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수술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의 필요성은 널리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있어, 영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까지 수사하고, 모든 계좌를 이 잡듯이 뒤졌으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까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노 전 대통령 연루 의혹의 핵심은 박희장이 건네준 돈을 대통령 재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취재원으로 하는 각종 뉴스가 연일 축구 생방송 중계 하듯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강박감은 상상을 추월했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나쁜 빨대를 반드시 색출해 내겠다”는 발언을 통해 검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검찰은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자백 강요 역시 자백배제법칙을 위반한 것이며,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의 범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박연차 게이트의 한 축으로 현재 살아있는 정부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마무리하였고, 세중나모 회장 천신일에 대한 수사에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사실과 비교하여 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깎살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으로 표현된 표적·과잉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은 아내 일을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변명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폄하하고, “잡범 수준” 운운하면서 비하하였다. 박희장이 노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역대 명품시계를 건넸고, 권양숙 여사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정점에 달했고, 이는 한국 언론들의 황색 저널리즘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하여 단순하게 국민의 알권리라고 변명하는 것은 참으로 구차스러운 변명이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2009년 4, 5월에 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보여준 수사행태가 위법하였고, 소위 검찰의 ‘언론 플레이’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정오대로 수사하여 기소하면 되었을 문제를, 검찰과 언론은 합동하여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잉태한 것이다.

### 3. 검찰권 행사의 통제방안

위에서 촛불집회·시위, 용산참사 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의 3가지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검찰과 언론의 잔인한 공동 작업 결과는 결국 헌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과거 5천년 역사의 왕조시대에 그리고 현대 헌정사에서 과연 왕이나 대통령이 자살하였다는 사건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다. 언론과 검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 리바이어던이고, 그 리바이어던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생하게 깨닫게 만든 현대사의 참극이었다. 스스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할 자질이 없다면, 그리고 과오를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는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수술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수술의 필요성은 널리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권행사 통제 방안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사단계, 기소 단계, 재판단계 등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므로, 몇가지 개인적인 견해만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같음하고자한다.

먼저 수사기관 문제, 즉 ‘수사의 주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문제를 빚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총장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8조). 이러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대상, 조직과 아울러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생각하면, 중수부의 수사는 태생적·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로 절제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남용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위험성 및 권력 남용 가능성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이 시도되었으나, 검찰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화 되지 못하였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그 폐해는 거의 없다. 기업이나 정치인 등의 부패혐의는 현재도 각급 검찰청에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으며, 단지 검찰총장이 직접 명령하는 수사만이 사라질 뿐이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공직부패수사처는 일종의 특별검사제도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으나,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자연 소멸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자기반성과

참여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많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담당 검사의 개방형 직위 임명제도,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통일체 원칙의 완화,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견해<sup>9)</sup>에 검찰은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둘째, 기소 단계에서의 국민 참여에 의한 통제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방안으로 미국처럼 대배심제도를 도입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민참여 재판에서 시민들이 유·무죄의 사실인정과 양형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시민을 배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민간인 배심원단의 결정에 의하여 직접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소추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는 검찰권 통제방안으로서 매우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영미법의 제도여서 대륙법계의 우리 법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배심 제도와 같은 검찰 통제방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배심 제도 도입 전이라도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상당·불기소 상당을 의결하여 불기소처분 검사의 소속 검사장에게 기소를 권고함으로써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국민참여 형태로 통제하는 것 방안도 유효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판단계에서의 국민 참여를 통한 통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획기적 방안이며, 아울러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5조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상은 살인·치사죄, 강도 살인·치사죄 등 중죄사건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반대하는 세력이나 개인에 대한 과잉·편파·표적수사 등이 지적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 심지어 파시즘의 초기단계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독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정부정책에 비판·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개인에 대한 각종 수사·기소에 있어 과잉·편파·표적수사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나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원이 재판 대상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도 검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맺음말

참여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많은 개혁이 진행되었다. 검찰총장 임기제, 검찰담당 검사의 개방형 직위 임명제도,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통일체 원칙의 완화,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이러한 제도 개혁의 일정 성과는 존재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원인과 통제방안의 대안을 일부 언급해 보았다.

한인섭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① 검찰이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인다는 불신, ② 검찰권 행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의심, ③ 검찰권 행사에 성역이 존재한다는 의심, ④ 제도적인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량권을 남용해 왔다는 불신으로 설명하고 검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관념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으로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 편파성과 선택성을 대가로 치르면서 얻는 지위인 한, 그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매섭게 질타한다.

1999년 쓰인 이 논문 이후로 10년 동안 과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로 사라졌을까? 검찰은 얼마나 변하였고, 살아있는 권력과의 동거·제휴를 떨쳐버리고 권력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였을까?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아픔에 얼마나 더 다가갔을까? 한인섭 교수가 말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 불신문제는 현재도 '타오르는 활화산'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1748년 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검사가 활동하기 때문에 시민은 평온을 누린다”는 말이 여전히 당위론으로만 들리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과 세상이 올 것을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2008), 380쪽

10) 문채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적통제와 기소편의주의의 미래」, 『안암법학』(1997), 67쪽

11) 한인섭, 「한국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풀리지 않는 숙제?」, 서울대학교 『법학』(1999) 192~193쪽

# 피의사실공표행위의 법적 쟁점

글 \_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형법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126조). 범죄가 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의 주체는 경찰과 검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공표되는 피의사실의 내용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공표행위의 시점은 공판을 청구하기 전, 즉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다. 따라서 범죄수사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 후에 피의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법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sup>1)</sup> 이처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해석론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히려 전혀 해석론의 문제점이 없는 이 범죄로 기소되는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범죄수사공무원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입법자의 결단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입법자의 결단은 곧 국민의 결단으로 의제된다. 하지만 모든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국가권력을 입법자에게 이양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자가 다수결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근본적 결단을 '헌법적 결단' 으로서 남겨 두었다.<sup>2)</sup> 헌법상의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 헌법적 법익이 거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헌법적 결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입법자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헌법적 결단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입법자가 형법에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위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한 결단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 한다. 문제는 어느 정도 민주화가 정착된 단계에서 입법자는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노골적으로 위반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어도 외관상은 국민의 특정한 헌법적 결단을 구체화하고 실현한다는 입법목적의 제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화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입법자가 입법 목적으로 제시한 특정한 헌법적 결단이 다른 헌법적 결단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특정한 헌법적 결단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하여 상호 충돌하는 헌법적 결단들의 조화와 균형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헌법적 결단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여부다.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성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대체 이 범죄를 규정함으로써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은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

고(III),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충돌하는 법익은 무엇인지를 다음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III), 실현하는 목적과 충돌하는 법익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한다(IV).

## II.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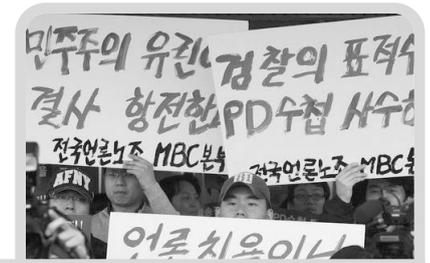
법률은 일정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이를 통해 일정한 법익을 보호한다.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한 입법목적은 오로지 개인적 법익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로만 보는 견해<sup>3)</sup>도 있지만 대체로 이와 함께 국가적 법익으로서 '범죄수사권'의 보호를 포함시킨다.<sup>4)</sup> 어떠한 견해가 옳은지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1. 헌법적 권리와 법익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헌법적 법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 법률을 통해 일정한 공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도 우선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다.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7조 제4항). 이러한 원칙은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피고인과 함께 형사피의자에게도 적용되고,<sup>6)</sup> 객관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엇

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2007), 808면 이하; 박상기, 『형법각론』(2005), 631면; 배종대, 『형법각론』(2006), 805면; 이재상, 『형법각론』(2007), 702면; 임웅, 『형법각론』(2003), 805면 참조  
2) '결단'이란 용어에도 불구하고 흔히 헌법관에 따라 분류되는 슈미트(C. Schmitt)류의 '결단주의'가 이 글에서 전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박상기, 『형법각론』(2005), 630면 참조  
4)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2007), 807면; 배종대, 『형법각론』(2006), 804면; 이재상, (2007), 702면; 임웅, 『형법각론』(2003), 804면 이하 참조  
5) 필자는 이미 헌법적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당성을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고려법학』(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47호(2006), 161면 이하 참조. 이 논문의 기본입장은 이 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6)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참조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명예에 관한 헌법상의 명시적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행복추구권)을 간접적 근거로,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헌법상의 명예권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다도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형사피의자를 보호하는 법률조항으로 이해된다.<sup>7)</sup>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되면 적절한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형사피의자가 유죄라는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피의사실공표죄는 형사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기도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동조 제3항). 명시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sup>8)</sup> 바로 이러한 재판의 공정성은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 위협받을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피의사실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여론의 향배(向背)에 따라 법관은 심리적 부담감이나 선판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판의 공개를 통해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된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가? 헌법은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 또한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9조). 수사단계에서는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사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형사피의자에게 유리하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피의자는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판단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형사피고인에게도 적절한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처럼 입법자는 헌법의 다양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피의사실이 공소제기 전에 공표된 경우에만 처벌함으로써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은 공개재판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차피 재판단계에서 공개될 수 있는 범죄사실이 수사단계에서 미리 공개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상이한 법적 상태 및 이를 고려하여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입법자의 의도를 간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밖에 피의사실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누출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및 '명예권'도 피의사실공표죄를 통해 보호되는 피의자의 인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에는 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sup>9)</sup> 피의사실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에 의해서 보장된다.<sup>10)</sup> 피의사실의 공표로 본인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개인정보(이름과 사진 등)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명예에 관한 헌법상의 명시적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행복추구권)을 간접적 근거로, 그리고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헌법상의 명예권을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헌법상의 명예권에 근거하여 형사피의자는 피의사실의 공표로 타격을 입게 될 자신의 명예에 대한 보장을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기본권이 문제된다면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헌법 제109조 단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능성 때문에 재판의 비공개가 허용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비공개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공익으로서 범죄수사권

입법자는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면서 범죄수사권의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범죄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으로 범죄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현실을 보면 범죄수사권이 방해받기보다는 대부분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사실상 범죄수사권의 방해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에 범죄수사권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1)</sup> 같은 맥락에서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법익은 오히려 피의자에게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결정 참조

8)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법익에 공정성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준일, 『헌법학강의』(2008), 802면 이하 참조

9) 헌법은 개인의 비밀한 영역, 즉 '넓은 의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16조) 및 통신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18조)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17조)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통신의 비밀을 제외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다는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설명은 이준일, 『헌법학강의』(2008), 676면 이하 참조

10) 피의사실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 이름과 얼굴을 들 수 있는데 이름과 얼굴의 경우에는 성명권과 초상권이라는 독자적인 기본권을 구성해볼 수도 있다.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되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167면 이하 참조

11) 같은 견해로 배중대, 『형법각론』(2006), 805면 참조

우선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이러한 기본권이 잠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이다.



### III.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법익

#### 1. 알 권리

무죄추정에 관한 기본권, 공정한 재판에 관한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헌법상의 명예권과 같은 헌법적 권리만 고려한다면 피의사실의 공표는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를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헌법적 권리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다. '정보에 관한 자유'로 이해되기도 하는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적인 기본권은 아니다.<sup>12)</sup> 그렇지만 '알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또는 일반적 자유권을 규정한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알 권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나 연예인의 범죄행위, 연쇄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수사단계라고 하더라도 공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2. 보도의 자유

피의사실의 비공개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사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보장된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 피의사실의 공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에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물론 피의사실공표죄는 신분범으로서 검찰이나 경찰 또는 범죄수사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들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아무튼 피의사실공표죄와 보도의 자유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의사실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거로 인용될 수는 있다.

### VI. 충돌하는 법익의 최적화

#### 1. 기본원칙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형사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의 금지를 위하여 '무죄추정을 받을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명예권'을 주장할 수 있

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사실공표의 허용을 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형량'을 통해 상충하는 기본권을 '최적의 상태'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는데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법익 또는 공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헌법상의 기본권이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의 충돌은 구조상 기본권의 제한에 포함된다.<sup>13)</sup> 중요한 것은 어떠한 양태로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하는 목적(법익)과 제한되는 기본권은 최적의 상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양태로서 기본권들이 충돌되는 경우에도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최적의 상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된다.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최적의 상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충돌하는 각각의 기본권이 우월해야만 하는 합리적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결국 상충하는 기본권의 최적화는 '구체적 상황'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기본권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관한 '합리적 판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리적 판단의 주체는 입법부와 사법부(특히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 시민이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공표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충돌하고 있는 한 쪽의 기본권(무죄추정을 받을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기본권, 명예에 관한 기본권)과 다른 쪽의 기본권(알 권리, 보도의 자유)이 각각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합리적 근거들이 다양한 이성적 시민들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최적의 상태가 실현될 것이 요구된다.

#### 2.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경우

우선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결단을 존중하여 이러한 기본권이 잠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부담이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형법제정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다(형법 제20조). 여기서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결단은 다른 기본권에 관한 헌법

12) 알 권리에 대해서는 이준일, 『헌법학강의』(2008), 638면 참조

13)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준일, 『헌법학강의』(2008), 406면 참조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아무튼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사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또는 보도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적 결단을 함께 고려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형법제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정당행위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피의사실의 공표가 범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형량에 따라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가 가지는 중대성이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이 가지는 중대성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정된다. 전국민의 공적 관심을 끄는 범죄행위로서 수사단계에서 공표하지 않으면 국민적 관심이 충족될 수 없는 수사내용이고, 그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하여야 한다.<sup>14)</sup>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피의사실과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성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피의사실의 공표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sup>15)</sup> 예를 들어 대통령의 뇌물죄나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프로듀서 및 작가)의 명예훼손죄 수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로 받은 시계를 특정한 장소에 버렸다는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브리핑이 아닌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의 명예훼손죄를 수사하면서 방송작가의 개인적 이메일을 공개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기본권이 가지는 중대성보다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가 가지는 중대성이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경우에도 법관은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요구된다. 물론 현행 제도하에서 법관의 기본권준중의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인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건에서 법관이 문제가 된 기본권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로지 법관의 양심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아무튼 수사기관은 물론 언론사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또는 보도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소극적 자세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법관이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 태도에 의해 교정될 필요가 있다.

## V. 결론

피의사실공표죄의 핵심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의 공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라도 허용되는지 하는 점이다. 피의사실의 공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견해는 그 근거가 되는 기본권의

절대성, 즉 제한불가능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론상로나 실정헌법(헌법 제37조 제2항)상로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가운데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금지근거가 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명예권도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본권들도 제한될 수 있고,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도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에 근거하여 이러한 기본권들도 제한될 수 있고, 피의사실 공표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허용될 수는 없다. 피의사실의 공표는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란 피의사실공표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과 피의사실공표의 허용을 정당화하는 기본권들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여 전자의 중대성이 후자의 중대성보다 우월하게 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피의사실공표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주장은 더욱 타당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금지되고, '단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으로 공표가 허용되는 피의사실의 대상과 범위는 그 근거가 되는 알 권리나 보도의 자유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허용이 원칙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당위적 규범으로 요구되어 피의사실공표죄의 폐지마저 주장될 수는 없고, 원칙과 예외의 합리적인 관계를 시급하게 회복하는 것이 온당하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헌법적 결단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관철하도록 요청하는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정신을 실현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



14)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15) 자세한 설명은 이준일,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179면 이하 참조



# 검찰개혁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

정리\_편집위원회

본지 편집위원회는 지난 7월 검찰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자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끝내 회신을 보내지 않았으며, 나머지 4개 정당은 모두 우리 검찰이

“문제가 많으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국민적 관심사에 스스로의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세 정당, 특히 여당이 보인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다른 정당의 입장들을 정리하여 싣는다. <편집자 주>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b>문제점 (우선순위)</b>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과도한 권력독점	지나친 정치성, 정치적 중립성의 부족	상명하복의 문화, 폐쇄적 인사제도, 기획수사·공안탄압 중수부 및 공안부	지나친 정치성
<b>그동안 도입된 검찰개혁 방안 중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b>	재정신청제도 확대,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	특별검사제, 검찰내부의 이익제기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
<b>바람직한 검찰조직 구성 방법</b>	현행 제도 유지 : 정부 임명제	검찰 내부 인사들 간의 투표제	국민 투표제, 지역 별로 나누어 지역 자체적으로 임명	국민 투표제, 지역 별로 나누어 지역 자체적으로 임명
<b>바람직한 검사 임용, 승진제도</b>	현행 제도 유지	근무 년차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검사들을 승진 시험으로 평가, 또는 검찰 내부에서의 간부 투표제	국민들의 검찰 간부 직선제	국민들의 검찰 간부 직선제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b>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방법</b>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상설 특별검사제도	상설 특별검사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견제, 감시	검찰 인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견제, 감시	검찰 인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견제, 감시 및 언론, 시민사회 단체의 감시
<b>대검중수부 폐지</b>	찬성	찬성	찬성	찬성
<b>검찰간부 선거제도</b>	입장 없음	찬성	찬성	찬성
<b>국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b>	찬성 :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검찰관련 개혁방안을 논의하므로 법조인 출신이 일정 수(3분의 1) 미만으로 제한	찬성 :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	찬성 : 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	찬성 : 학계, 시민단체, 법률 관련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단없이 추진
<b>기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b>	검찰제도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음.	검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정치검찰에서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가기구로 재탄생해야 하고, 기소독점권을 타파해야 함 - 검찰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국가기구와 상위 구조를 새롭게 논의하고 규정

# 에버랜드 판결 유감

글 \_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국민장 5월 29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민장일인 5월 29일, 사법부 최고기관의 존재의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경영권 편법승계에 대한 에버랜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법률가로서의 대법관의 역할과 자질, 사법부의 조직과 행정, 법관의 정치화, 사법부 인사체계에 대한 개혁 등에 관한 숏한 의문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사건 1심 이견희씨 측의 변론을 지휘 하였던 변호사였다. 그런 연후로 당 판결에서 회피하였다고는 하나, 직책상 어떤 형태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를 부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 삼성특검의 1심재판을 배당함에 있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공보관시절부터 무죄를 주장하던 판사에게 배정된 것이었다. 또한 금번 대법원 판결은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도 관련된다. 6대5의 무죄 판결인 결과, 신대법관이 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되고 말았다. 그 임명에서부터 촛불재판 개입으로, 여론 뿐 아니라 전국 판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신영철 대법관이 금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가담한 것이다. 법관신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그 역할에 걸맞는 정당한 사법권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처럼 법리를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구성, 그리고 사건배당에서부터 그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도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의 개혁이나 개선을 고민해야 하겠다.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권력에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고 정치 관료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 2. 판결의 요지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이견희씨가 차남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시

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이를 결정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에 손해가 없고 이사의 임무위배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제3자배정과는 달리 주주배정에서는 액면가 이상의 발행이거만 하면 회사의 손해가 없다. 둘째, 주주배정인지 여부는 결과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는 주주에게 배정되었지만 주주들이 실권함으로써 이를 이재용 씨 등에게 인수토록 한 것일 뿐이어서 이견희씨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제3자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회사의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 지배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다. 당 판결은 법리왜곡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해당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승인하여, 향후 유사 행위를 조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다수 대법관들은 우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 유사행위의 조장과 관련하여

금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자, 그 예를 보자. “S회사의 주식은 액면가 100원이나 시중에서 200,000원에 유통된다. S회사는 甲에 의하여 지배되고, 여타 주주 모두 甲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甲은 S회사의 경영권을 저가(低價)로 그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시키고자 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00원에 발행토록 하면서,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그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하였고, 직계비속은 액면가 100원으로 발행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하였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바가 없다는 것이다.

금번 선고로 말미암아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손해가 없다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이사의 임무위배도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을 접하고선, 건전한 상식에 반한다는 생각이 드는 한 편 많은 의문점이 생겨남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사는 지배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자이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이재용씨에게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인가?

#### 4. 이사의 임무

##### (1) 지배주주의 지배권 이전을 목적

판결문은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주주배정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한 태양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에 관련 권한이 주어져 있다. 지배주주의 지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회사를 위한 적법한 임무수행의 한 방법인가? 아무리 피고인 측의 주장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임무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원심에서 모두 인정한 사실관계이다).

자, 이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을 다시 보자.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특별히 문제될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궤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이 쟁점을 다루기도 이전에 회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많은 것이 좋다고 하여야 한다. 즉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주주와 회사의 이익은 분리되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옳은 것이다. 대법원은 원칙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논리들을 총동원하여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임무해태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손해가 없다는 쟁점을 보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주주배정의 경우 회사손해가 없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이다.

##### (2) 이사회 결의의 하자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에도 이사들은 그 발행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또 다시 사법부 최고기관의 의견인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 근거로, 첫째 주주배정방식이어서 회사의 손해가 없고, 둘째 이사회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첫째의 근거는 그 방식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문제되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순환논법으로 적절치 못하다. 둘째의 근거도 신주발행 효력문제와 이사의 임무위배 또는 책임문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를 보면,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상식에 가까운 상법 이론이다. 즉 효력 문제와 임무위배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백번양보하여 같

은 것이라 치더라도, 당시에는 신주발행이 무효로 돌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법원 판결이 내세우는 근거는 박약하여, 오히려 비판을 받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여기서도 관련 이론을 동원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음, 임무해태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손해가 없다는 쟁점을 보자.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주주배정의 경우 회사손해가 없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이다.



판결은 그 근거를 주주는 회사에 대해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꾸준히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에 따라 적정가(이것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중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한다')로 발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 5. 주주배정의 경우

### (1)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으로만 발행하면 된다?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여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등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이, 판결 논리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는 타당한가? 판결은 그 근거를 주주는 회사에 대해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주가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함은 신주인수가 강요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무상주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에 있어 그 발행가액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근거는 박약한 반면 그 비판의 강도는 높다. 다음을 보자.

첫째, 액면가 기능의 소멸이다. 현대에는 액면가가 명목화되어 거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이상이거니와 회사손해가 없다거나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논리는 특정인의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를 위한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액면가가 100원 이상이거니와 되고, 또한 조만간 무액면주식도 도입될 예정이고(현재 무액면주식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면, 액면가 이상으로 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둘째, 자본과 자산의 구별이다. 우리 상법은 자본과 자산이라는 개념을 엄격히 준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종 이들 개념에 대한 혼동을 하고 있다. 자본의 측면에서는 액면가로 발행하든 공정가로 발행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지만, 상법상으로는 주식을 공정가로 발행하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위 점을 기초로 '회사는 결국 자산을 많이 취득하고자 활동하는 것'이라는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영리법인인 회사는 용역이나 재화를 판매하여 자산을 많이 얻고자 활동하는 것이고, 만약 액면가가 아닌 공정가로 주식을 발행한다면 회사의 자산은 그 차액만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꾸준히 주주배정의 경우에도 경영판단에 따라 적정가(이것은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 중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

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한다')로 발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 사례로 든 S회사의 입장으로서 100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회사의 입장으로서 그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만약 1주를 甲에게 100원에 발행하면서 甲이 그 주식을 바로 20만원에 제3자에게 판다면, 의당 회사로 유입되어야 할 금액이 甲의 몫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점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회사이익과 주주이익은 구별된다는 점을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리고 회사측 입장만 놓고 보아서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이 무엇이 다른가? 지배권 이전 부분에서의 대법원 판결 논리를 따르는 경우에도 회사로 보아서는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구별되는 것이고, 회사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회사법의 기본적인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으로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 (2)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의 여부

당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의 가장 큰 불일치점이다.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달리 주주배정 방식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이사의 임무를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주주배정 방식을 취하는 경우라도 실권주의 제3자배정이 가지는 실질이 당초부터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제3자배정 방식을 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실권주를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판결은 다수의견에 따라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기존 주주들이 인수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기한 것이라고 본다. 사실, 필자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필요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 주주배정 경우라도 회사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소송법적 차원에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판결에서는 제3자배정임을 분명히 하였고, 특검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판결에서도 지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발행이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의 점에서도 비판을 가한다. 첫째, 이사회 자체가 정족수 미달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주주배정, 제3자배정을 논할 이유가 없다. 둘째, 설령 그 이사회가 유효하였다 하더라도 '지배권 이전을 목적

선박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 기관 뿐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 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 기관에 같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무모하게 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해 선박 소유자인 법인의 행위로 보아 책임 제한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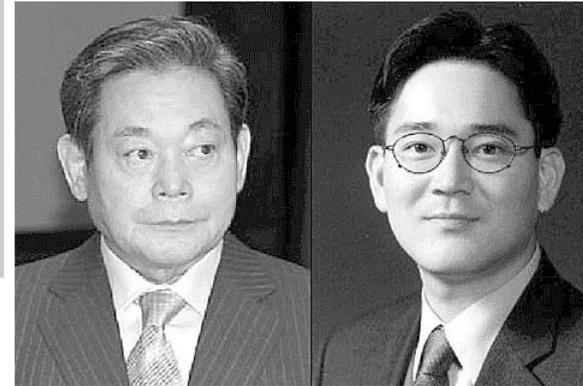
으로 한 신주발행 이라고 한다면 제3자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민법과 상법 등에서 의사주의가 중심으로 자리잡아, 주주의 확정에 있어서도 명목상의 주주와 실질상의 주주가 다를 때 실질주주가 주주임은 상법학계의 정설이고 판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애초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유로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은, 이러한 이론과도 정면으로 반한다. 게다가 당시 주도면밀하게 여러 계열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상황이었음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 6. 기타의 문제

### (1) 판결의 불명확

그런데 당 판결이 주주배정의 경우 회사손해가 없다 라는 취지로 읽히면서도, 그 문언을 보다 자세히 보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판결이, 주주배정의 경우 액면가 이상이기만 하면 회사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것인지, 또는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경영판단 등 다른 요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보면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회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등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다가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의 두 문장을 보면 주주배정의 경우라도 올바른 임무수행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읽히다가도, 가장 뒤 표현만을 보면 다른 취지로도 읽힌다.

요컨대 판결문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맹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모호하다. 대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법원 스스로 이 판결 법리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곡히 바란다. 어쨌든 이는 향후 관련 법리해석에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



### (2) 민사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민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다. 주주

배정시 회사의 손해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논리라고 보면, 이 사건 회사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표소송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저가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은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사의무의 상대방은 회사이지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는 별다른 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 즉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부당한 편법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상 민사상 모든 구제수단이 봉쇄되었다.

## 7. 맺으며

주주배정의 경우 회사손해가 없다는 논리는 회사가 주주만의 것이라는 편향된 이론에 바탕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 이상에서 지적하였듯, 제3자배정과 주주배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강조한다면 순자산(특히 그것이 현금이라면)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혹은 좋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판결 법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이 점 가급적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그 비판의 칼날을 모면하자는 뜻은 아닌가 하는 선부른 추측이 오류이기를 믿는다.

이번 판결은 편법상속 또는 승계에 있어 향후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여 주게 되었다. 지배주주가 정상가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액면가로 형식상으로만(그것도 이사회 정족수가 흠결될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배정을 하고, 이후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권하도록 유도한 뒤, 그 청약의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지배주주가 원하는 자에게 그대로 배정하는 결의를 하는 행위를 설혹 하더라도, 임무위배도 없고 회사손해도 없게 되어,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장려하는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다수 대법관들이 이런 의견에 찬성하였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사법조직에 대한 개혁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내집마련 꿈 박탈법안'

정리 \_입법감시TF

정부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1. 대상 법안

- 2009. 2. 13. 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815호

## 2. 법안 요지

- 제안 이유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며, 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지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안 및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재개발·일반건설회사의 개발사업 등 민간건설에는 적용을 배제함.

## 3. 의견

가. 정부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둔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실수요자들이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야만 겨우 분양이 가능한 고분양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적정 주택가격은 연 소득 대비 3-4배 정도의 가격(PIR : Price To Income Ratio)인데, 평균적인 도시근로자의 연봉이 4,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적정 주택가격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이나 수도권만의 경우만 해도 연 소득 대비 7-8배 정도인 3억 원이 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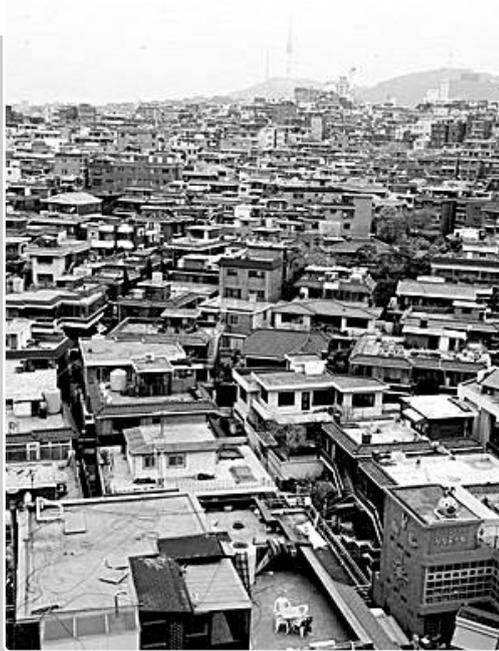
결국 주택 실수요자들이 부동산거래에 참여하여 거래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가격이 내려야만 하는데 오히려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해서 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나. 또한, 실수요자인 200만 명의 무주택서민들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의 실시와 연계하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 기간을 늘리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위와 같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공급을 기대해 오고 있던 무주택 서민들의 법적 기대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정당한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주택 실수요자들이 부동산거래에 참여하여 거래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분양가격이 내려야만 하는데 오히려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해서 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많은 뉴타운 지정과 과속 개발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아울러 이러한 과속개발, 동시다발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또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폐지하고 도심개발 사업을 강행한다면 경제 회복기에 다시 기성 시가지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도 우려된다.

그동안 기성 시가지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 부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로 인한 사업이익 감소 부분을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만회하여 왔다.

그러다보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20~30% 높게 책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

이 계속 반복되며 기성 시가지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것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는 이러한 주변시세 보다 높은 고분양가 책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많은 뉴타운 지정과 과속 개발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아울러 이러한 과속개발, 동시다발 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풀어버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건축과 재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주변 집값이 반복적으로 상승하여 부동산투기가 만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

참고자료 (출처 :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 현행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공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비 + 건축비”이하의 가격으로 제한</li> </ul> </li>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에게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li> <li>* 재건축 등의 조합원 공급분, 20세대미만 주택 등은 적용 배제</li> </ul> </li> <li>● 택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 “공급가격 + 가산비”</li> <li>- (민간택지) “감정평가액 + 가산비”</li> <li>* 민간택지는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등 실매입가를 예외적으로 인정</li> </ul> </li> <li>● 건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로 산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 : 61개(택지비 4, 공사비 50, 간접비 6, 가산비 1)</li> <li>- 민간택지 : 7개(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li> <li>* 민간택지는 주택업계의 부담축소를 위해 공개범위와 대상을 완화하여 적용</li> </ul> </li>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택지 :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li> <li>- 민간택지 :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li> </ul> </li> </ul>

## 한예중 사태의 진실과 거짓말 U-AT 통섭교육사업 평가를 중심으로

글 \_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5월 18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에 통보한 12개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학 내외의 강한 이의제기와 반발 등을 반영하여 6월 16일 감사결과 최종 처분요구서를 한예중에 통보했다. 총 12개 항목 중 2개 사항(입시 운영, 기금 운영 지적 사항)은 정황을 참작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했고, 이론학과의 경우 "축소"라는 애초의 요구를 "이론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대체했으며, "서사창작과 폐지"는 "재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변경했다.

나머지 통섭교육 중단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다만 원안에서는 징계 대상 교수가 3명이었던 것을 통섭교육사업 총괄책임교수 1인에 대한 중징계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미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서사창작과 등 기존 학과는 폐지하지 않지만 현행법과 불일치는 반드시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수의 임용과 재임용 및 징계 등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며, "이번 감사와 결과에 대해 더 이상의 오해나 편견이 없기를 바라며, 향후 예술교육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위상을 흐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한국예술종합학교 종합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에 붙여")을 공문에 첨부했다.

이로써 5월 19일 황지우 총장의 사퇴와 더불어 근 한 달 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예중 사태'가 일단락을 맺게 된 것처럼 보인다. 안내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예중 사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론과 '축소'(감사관의 언론보도에서는 폐지) 및 서사창작과 '폐지'라는 쟁점이 해소되었고, 시스템 개선이나 황지우 총장의 교수자격 회복 문제, 책임교수 1인에 대한 중징계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체부에 대해 이의제기 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예중 사태의 '뜨거운 감자'가 잠시 식었다고 해도, 사태의 본질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12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중에서 통섭교육사업 중단 및 책임자 중징계를 포함한 8개 항목에 대한 처분 요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론과와 서사창작과 문제 역시 "현행법과의 불일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여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분 요구를 문체부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문화 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예중 사태 해결의 공은 문체부에서 학교 측으로 돌아온 셈이다.

애초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징계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문체부가 언론에 브리핑하여 마치 강제 처분되어야 할 타율적 사안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까? 이러저런 사정을 요약해 보면 문체부는 안내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과를 가능하게 한 자유가 때로는 안일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최초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언론에 이 문제를 보도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만드는 무리수를 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한예중이 그동안 자율성을 '남용' 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가 자율성을 남용해 왔다면, 매번 이를 승인해 온 문체부 역시 자율성의 남용을 '승인' 해 온 격이고, 이 사실을 이번에 문체부 스스로가 확인해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설립취지를 위배하는 자율성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섭교육사업을 들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총괄책임교수를 중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준 2007년 문체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승인된 사업을 수행한 보직교수에게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일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 기자재 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감사팀이 판단한 의자나 탁자의 적정 개수를 초과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군대식의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 대학의 기자재 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적 판단을 전제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다하다는 것은 남아돈다는 것인데, '08년에 구입한 모든 기자재는 남아돌지 않고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고, 2009년에는 AT랩과 협동과정 및 각원에 적절히 재배치하여 잘 사용하고 있다.

2) '08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공채 이외에도 특채를 포함한 다양한 채용 방식을 통해 - 규정에도 공채가 어려울 시 특채를 하도록 적시되어 있다 - 역량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였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랩을 운영할 경우 공채로 적합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책임교수 책임 하에 특채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채를 진행했기에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

2 문체부는 통섭교육은 기초예술교육 강화라는 설립취지에 위배되고, 이론과와 서사창작과 및 협동과정 운영은 실기위주의 전공심화교육에 저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이론과와 협동과정이 현대에 예술교육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다양하게 제기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쟁점을 모두 포함할 수밖에 없는 통섭교육의 타당성 문제에 국한하여 문체부의 지적의 부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통섭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중 연구 기자재 '과다 구입'<sup>1)</sup>, 연구원 채용 규정의 부적정한 운영<sup>2)</sup>, 연구수당 지급 세부 규정 미비<sup>3)</sup> 등과 같은 언어도단적이고 말단지엽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유인촌 장관은 2008년 3월 취임 후 본교를 방문,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황지우 총장에게 본교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통섭교육 사업을 하지 말고, '기초예술' 교육에 전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가을 국회에서 2009년 동 사업 국고예산 전액 삭감 이유를 질의한 데 대해서도 문체부는 통섭교육사업이 '기초예술' 육성이라는 본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통섭교육이 기초예술이 아니라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 통섭형 예술창작의 대표적 사례인 백남준의 작품 역시 기초예술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럴 경우 자연히 기초예술의 범위는 극히 좁혀질 수밖에 없다. 가령 개별 장르별로 분화된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 회화와 같은 19세기 서구의 '순수예술'이 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체부는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이 2세기 전의 특정한 장르적 전통예술만을 교육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는 셈이 된다. 정말 이런 해괴한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통섭교육은 21세기의 기초예술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2) U-AT 통섭교육사업이 CT대학원이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CT 연구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1) CT 대학원의 경우 공학 기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반해 본교는 예술 기반에서 출발하고 있고, (2) CT 대학원이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제작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교는 예술 장르 간 콘텐츠 융복합에 초점을 두고 있고, (3) CT 대학원이 융복합의 공학적 원리 발견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교는 예술에서 출발하여 인문학 및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의 미학적 원리와 통섭형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본교의 교육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CT 공모사업과도 큰 차이가 있다. 6개원의 장르 예술 간 통섭을 통해 새로운 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단위는 국내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외에 없는 데 반해, CT 사업은 공모에 당선된 일반대학 내의 개별 연구소와 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기에 통섭형 콘텐츠 창작교육이라는 지속적인 '교육적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차이들은 각 기관들은 예술과 과학기술의 통섭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한편에서는 예술에 다른 편에서는 공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학문간 융복합을 강조하면서도 후자는 살리고 전자를 중복사업이라고 중단시키는 것은, 통섭이나 융복합을 할 경우 그 주도권은 언제나 과학기술 분야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융복합 혹은 통섭교육에서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3) 위의 두 가지 쟁점이 주로 개념적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사업성과 부실'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본 사업에 대해 "U-AT 통섭교육사업은 초기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부 교수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32억원(인건비 12억원, 기자재 15억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결과물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뢰하여 10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질적 평가 차원에서 개념 제시에 한계가 있고, 교내 워크숍, 세미나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우선 "초기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부 교수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본교는 2007년 동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두 차례의 전체교수회의와 여러 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통섭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이고, 예술관의 차이에 따라 원간 교류가 전공교육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교수들은 이 사업의 추진에 동의한 바 있다. 또한 장르 간 횡단과 예술과 인문학의 긴밀한 결합 교육의 필요성,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예술교육 패러다임의 수립 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6년부터 진행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수십 차례 진행된 크고 작은 설명회와 회의를 거쳐 교수들의 다수 의견으로 수렴되어 2007년 4월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공표된 바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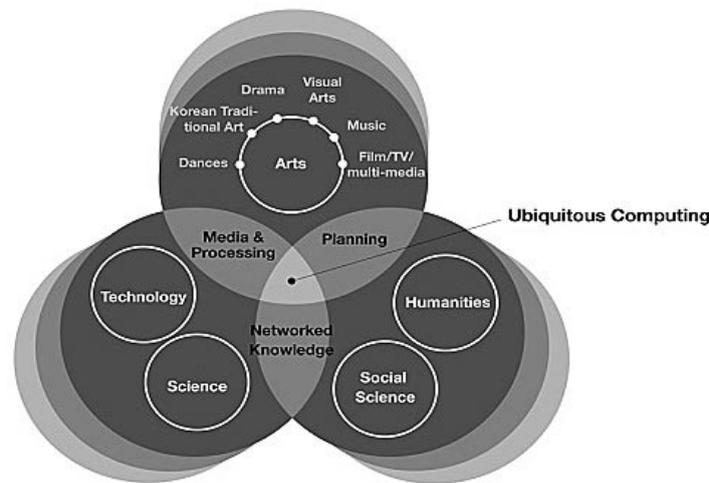
3) 기성회비 연구수당은 이미 '07년 12월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기성회비 연구수당은 본래 1년 연구 결과가 종료된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08년 12월 사업 종료 후에 세부 평가근거를 만들어 '09년 2월에 지급한 것이고, '08년 10월 국제행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높은 성과를 이룬 사업이기에 연구수당 지급에는 하자가 없었다. 감사팀에서는 지급에 대한 운영세칙을 2008년 사업기간 동안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운영세칙이라는 것과 세부 평가근거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며, 어차피 1년 단위의 연구기간 종료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해야만 현실적인 세부 평가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지적은 억지 문제기에 다를 아니다.



런 맥락 속에서 형성된 “U-AT 통섭교육사업”은 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 공표한 마스터플랜의 ‘액션 플랜’에 해당하며, 2년 간 다수 교수들의 합의 과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다.

(2) U-AT통섭교육사업은 본 사업의 <기본계획서>(2008.3.2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U-AT 통섭교육사업”의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니라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하듯이 복합개념이다. (A)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을 통해 그간 분리되어 있던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결합한 제3공간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요구하는, (B) 기존의 6개 장르별 전공 심화 트랙 이외에 6개 장르 간 비환원주의적 ‘통섭’ (consilience= jumping together)을 촉진하며, (C) 예술과 인문사회과학, 과학기술 간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을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라는 다양한 수준의 내용들을 결합한 복합개념이다. 이 각각의 의미와 결합방식에 대해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많은 다이어그램과 글을 통해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통섭”이라는 개념은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Consilience>를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번역하면서 조탁한 용어이다. ‘consilience’의 어원에는 ‘Jumping together’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도약을 할 경우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 갈래의 흐름들이 뒤섞여 융합이 되는 경우, 둘 또는 셋의 흐름이 일치하여 통합되는 경우, 함께 뒤섞이다가 다시 갈라지는 경우 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열려진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통섭적 학문의 대표적 사례인 복잡계 과학에 따르면 이렇게 이질적인 계열들의 복합적인 뒤섞임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복잡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경험을 촉진하는 창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복잡한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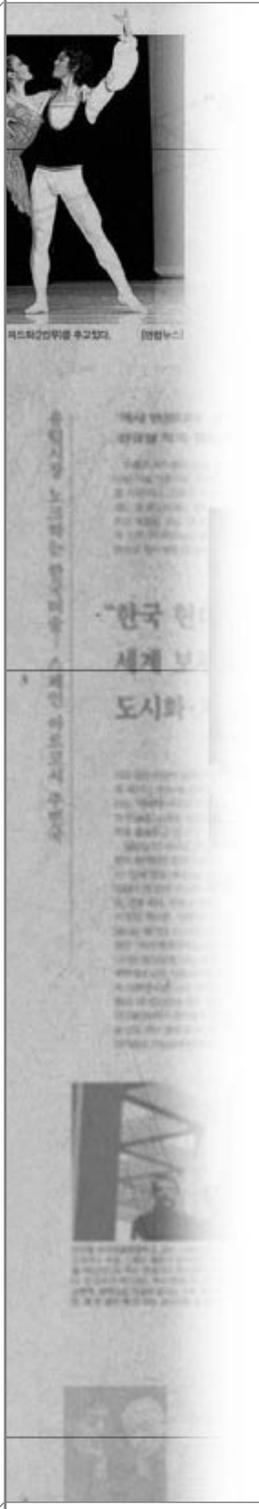
작용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은 예술-예술 사이의 연계를 동태적 이계 만들고, 예술-과학, 예술-인문학, 과학-인문학 간의 다중 네트워크로 중첩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섭’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태적인 학제 간 연구와 다르며, 여러 갈래가 모여 하나로 융복합되는 과정과도 다르다. 이런 다차원적 연결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밖에도 통섭교육의 다양한 차원과 방법론 등에 대해 여러 다이어그램들과 상세한 설명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학부생들도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과 설명을 포함한 개념의 제시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개념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4) 감사팀이 ‘교내 세미나 또는 워크숍’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사업은 2008년 10월 8~11일에 개최되었던 <isAT 2008 예술과과학기술통섭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사업이라고 추정된다. (나머지 교육사업들로는 ’08년 2학기에 시행한 8개의 시범교과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는 교내 재학생을 상대로 한 시범교과 운영이었기에 이를 두고 ‘교내 워크숍’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은 동어반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연인원 3,000여명에 달하는 교내의 관객들과 해외저명 인사 7명 및 본교를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들과 국내외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국제심포지움이었고, 오픈워크숍, 컨퍼런스, 비디오 공연, 스탠포드 대학과의 실시간 원격 네트워크 퍼포먼스, 미디어 퍼포먼스, 23개 팀이 참여한 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당시 수많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이미 감사팀에 제출한 <isAT 2008 결과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만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지적하는 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 국제 행사가 ‘교내 워크숍’ 수준이었다면, 당시 언론과 방송에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어야 할 것이다(일례로 2007년 상반기 카이스트 CT대학원에서 개최한 “신타지아”라는 미디어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또한 2008년 10월 당시는 국회에서 동 사업의 2009년도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던 상황이었기에 ‘부실한’ 행사였다면 곧바로 국회와 문체부로부터도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행사를 ‘교내 세미나 수준’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08년 2학기에는 8개의 통섭시범교과가 운영되었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문제점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교과와 내용과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점검함과 아울러 본 교과를 2009년에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수요자인 학생들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12월 2일~8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 전체 수강생 129명 중 115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개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수강 학생들은 “통섭의 필요성(94%)”과 향후 “통섭 수업 지속 요구”(97%)를 강조. 그 이유로는 통섭시범교육을 통하여 “향후 자신의 창작 능력을 향상 시킬 계기가 되며”(58%), “통섭교육이 자신의 전공에도 도움이 된다”(17%), 그리고 “다양한 교양을 습득할 필요성”(13%)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부분의 학생이 수업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90%), 팀티칭 등 새로운 진행 방식도 보통 이상의 만족도(84%)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시범교과 운영사업 역시 전반적인 ‘부실’이라는 평가와는 상반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3** 30억 원이 넘는 국고 예산사업은 계획의 수립과 예산 승인 과정은 물론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 집행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업이 천재지변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힘에 의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외적 요인에 의해 강제 중단되었을 경우, 이점이 평가에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한 사업의 경우 그 중심 과제의 성취와 지원적 과제의 성취를 구분하여 전체적인 성취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지 수백 가지의 세부 과제들을 나열하여 하나하나의 흠결을 뒤지는 방식의 평가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셋째, 본래 목표했던 사업의 전체 기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 기간의 사업의 성취도를 평가해야지, 전체 사업의 소요 기간을 고려함 없이 1년 단위에 국한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는 4학년 과정의 대학과정을 전제한 1학년 과정을 놓고 왜 4학년만큼의 성취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과 동일하다.(평가자들의 전문성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겠다) 그러나 문체부의 감사팀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않았고, 스스로 중단시킨 사업에서 사소한 ‘먼지’ 들을 찾아내어 전체 사업을 ‘부실’로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상 국고 예산이 1/2로 삭감되기 시작한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은 예기치 않은 태풍을 만난 격이었고,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진 2008년 8월부터는 암초에 부딪

쳐 배가 난파하기 시작한 셈이었다. 하지만 이런 심리적, 행정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가을 국제심포지움을 성황리에 성사시키고, 8개의 시범교과와 포항공대와 의 교류교과를 높은 호응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32권의 보고서와 DVD 세트를 12월 말 이내에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 그대로 험난한 파도 속에서 배가 부서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책임교수와 70여명의 연구원들이 오직 예술과 과학 기술의 통섭교육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했다는 자부심과 흥미진진한 과제들이 주는 즐거움에 기대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었다.

전체 사업은 지난 해 12월 중단되었지만 그 성과는 모두 보고서와 영상자료로 남아 있다. 물론 필자 본인을 포함하여 책임교수들과 연구원들 모두가 개념 구상과 실험, 기술 연구와 프로토타입 개발, 교육과정 운영 면 등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사업 중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흡함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장관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본 사업을 1/10 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한 것을 중징계 사유에 포함시킨 것 역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아마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배를 몰아 그나마 안전하게 항구로 귀항한 것에 대해서만도 높이 치하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좌초된 배에서 흠집을 발견하기 위해, 명백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산적한 자료들을 외면하고, 오직 미리 정해진 왜곡된 형태의 ‘질적 평가’를 고집하는 그 집요함에 섬뜩함을 느낄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이번 한예중 사태를 통해 항지우 총장의 사표를 얻어냈고, 통섭교육사업의 중단 및 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와 이론과와 서사창작과의 운영 개선 요구를 최종 공표함으로써 해당 교수들과 학과들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흔드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다.

그러나 예술과 학문의 자유는 헌법과 고등교육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사와 행정명령으로 봉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오늘날 예술과 학문의 통섭에 대한 요구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문체부가 진정으로 문화적 ‘선진화’를 추진할 정책부서라면 이미 이룩한 성과를 정치적으로 백안시하는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해외의 우수 대학들에 비해 이미 십 수 년씩 뒤진 이 새 흐름을 적극 수용, 그간의 성과와 접합시켜, 21세기 기초예술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가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 사형제 구두변론



## 사건

2008헌가23 형법제41조 등 위헌제청

## 제청법원

광주고등법원

## 당해소송

광주고등법원 2008노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청신청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음

없습니다. 다만 그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라는 견해,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이라는 견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이라는 견해 또는 위 규정들의 종합이라는 견해 등의 입장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250조 등은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①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② 가사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 법률유보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형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③ 사형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금지되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제청신청인 의견의 요지

가. 우리 헌법상 생명권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 2.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현황

#### 가.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현황

(1)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사형제도의 합헌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차원에서는 형법과 특별형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의 경우 각칙에서 16개의 조문이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형법의 경우 16개의 특별형법에서 76개 조항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등 무려 92개의 조항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과정에 있어 사형제도가 매우 남용되고 있고, 이러한 법 현실은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내성(耐性)을 높여 사형제도의 반인도주의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 나.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현황

통계에 의하면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8명에 이릅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람의 수는 총 96명, 연평균 10.6명입니다.

사형의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최근 10여 년 간

이루어진 적은 없으나, 사형의 선고는 계속되고 있고,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 수는 1995년 17명, 1996년 12명, 1997년 12명, 1998년 6명, 1999년 7명, 2000년 9명, 2001년 8명, 2002년 2명, 2003년 5명이며,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 중인 자는 59명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원이 과거보다 사형선고에 신중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과거 10여 년 동안 그 이전보다 사형이 확정된 사건 수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형제도 존치가 일반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준다 하겠습니다.

#### 다.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국제앰네스티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8개 국입니다. 이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2개 국, 전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범한 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개 국, 사형제도는 존치하나 최근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는 36개 국이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까지 하는 국가는 59개 국입니다. 이는 2000년의 108개 국, 2004년의

특히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평화롭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권리 즉 생명보존활동을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으로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18개 국에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1996년 말 이후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37개국(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 31개국,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 6개국)이고, 우리나라처럼 위 기간 동안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인정된 국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적 추세입니다. 사형제 폐지의 흐름은 유럽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 유엔 인권위의 사형집행유예결의문,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현재 가입 국가별 국민투표 절차를 밟고 있는 유럽연합 헌법 등이 있습니다.

### 3. 사형제도 위헌의 논거

#### 가. 생명권 침해의 위헌성

(1) 생명권이 우리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권의 내용으로는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평화로운 생존상태를 방해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 생명 유지에 방해를 받을 경우 방해의 제거 또는 구조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평화롭게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권리 즉 생명보존활동을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으로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 95헌바1 사건의 소수의견 중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사회과학적·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생명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를 조영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 그리고 고유한 존재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모든 기본권이 생명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원이 되는 최고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논증 역시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3) 요컨대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등의 법률조항은 생명권의 자유권적 측면이자

사형제는 범죄인의 생명을 종국적이고 완전하게 빼앗는 제도여서 형벌제도가 의도하여야 하는 3가지 목적 중 응보와 일반예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예방을 추구하지 아니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명유지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위헌입니다.

####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위헌성

(1) 견해를 달리하여 방해받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생명을 유지할 권리도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제한 수단이 적정하여야 하며, 제한의 정도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국민이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제한당하는 법익을 비교·교량하여 양자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목적으

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들고 있습니다. 사형은 형벌의 일종이고, 형벌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형벌제도를 통해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질서유지에 복무합니다. 근대 형법에 있어 형벌제도는 범죄자의 불법성의 크기에 비례하는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을 응보함과 동시에 범죄인을 교화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형벌의 위하 효과에 의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억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법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형벌을 통해 위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범죄인의 생명을 종국적이고 완전하게 빼앗는 제도여서 형벌제도가 의도하여야 하는 3가지 목적 중 응보와 일반예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예방을 추구하지 아니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사형제가 목적하는 응보는, 창조주 이외에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역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인 생명을 빼앗는 야만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인 가치로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문명적인 내용으로 고안되어야 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응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제는 탈리오적인 응보가 아닌 문명화된 응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특

죄인의 불법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구보다 무겁다는

사람의 목숨에 견줄 수는 없고, 사형제도는 동해보복적인 야만적 복수의 잔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응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벌예방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결국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복수의 잔재이자 국민일반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만을 갖고 있어서 그 입법목적인 헌법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반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형벌의 목적 중의 하나인 범죄인의 교화, 개선을 처음부터 완전히 포기하는 형벌이므로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입니다. 또한 응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응보는 책임 원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바, 죄인의 불법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구보다 무겁다는 사람의 목숨에 견줄 수는 없고, 사형제도는 동해보복적인 야만적 복수의 잔재일 뿐이라는 점에서 응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제도가 일반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지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자에 따라서 사형이 폐지되어도 살인율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년간 1

건의 사형집행을 추가로 실시할 때마다 7-8건의 살인이 억제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난 10여 년 간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살인사건 또는 사형확정 판결의 증감이 사형제 존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형제도의 존치가 극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순간적인 극도의 흥분과 격정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인격의 파탄이나 자포자기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정신상태 아래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행위의 결과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하고 그 결과 사형을 피하기 위해 범행의 충동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형이 충동적이거나 극악한 범행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효과 자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국가와 사회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제도를 제도로서 용인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한 수단을 선택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 헌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최고의 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모든 입법은 위 원리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인격의 구현체인 인간을 오로지 목적으로 대할 수 있을 뿐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제에 의해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을 달성한다는 관념은 인간의 생명 박탈의 위협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사형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후일 오판임이 판명되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결과 과거와 같이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사형수가 마지막 집행장에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합니다. 사법적 판단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합의되고 제도화된 산물일 뿐 절대적으로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판의 위험성은 절대적으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하나의 판단 또는 가설에 의하여 극히 명백한 존재 그 자

체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국가나 사법의 존립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4) 피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설사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일지라도 그 밖의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것에 그쳐야 합니다.

사형제는 다른 형벌과 달리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은 인간의 목숨을 궁극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사형제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형벌인 종신형 또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법상의 무기징역형은 이 사건 제정 법원의 결정문에 잘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사형제의 대체형벌로서 기능하기에 여러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 중 왜곡된 부분 중 하나가 사형폐지론이 마치 범인에게 부당한 온정을 베푸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사형폐지론이 대체형벌로서 제시하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 즉 종신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초래된





일각에서는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명시적으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이 사형제도를 형벌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인정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위반의 위헌성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경우에는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기본권 제한 입법을 통해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을 공동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사형제도가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조문 체계, 즉 기본권 제한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 상호 경합하는 이익과 가치의 형량을 통해 확정되며 그 개념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보다 넓게 또는 보다 좁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상대설)나, 기본권의 핵심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긍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체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의 핵심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절충설)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또는 핵심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절대설)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완전하고 종국적으로 박탈하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사형에 의해 생명권을 제한할 경우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됩니다. 사형은 생명권이 보호하는 본질적 내용인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 즉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라. 헌법 제110조 제4항과의 관계

(1) 우리나라 헌법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헌법 제110조(군사재판)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명시적으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이 사형제도를 형벌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헌법에 대한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에도 반하고 헌법제정권력의 의사에도 반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조항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

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은 시대적·지역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자연법적 정의를 성문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헌법 규범 중에서도 근본규범에 속하는 것인 반면,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심제가 허용될 수 있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 중에서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제에 의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러한 예근거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기술 예성행은 강행 있는할 것이므로, 위 두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러한 예규율의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규범력이 동일할 있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제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등에 위반되어 위헌인 이상 그보다 하위에 있는 헌법규범인 헌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만약 헌법 제110조 제4항이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라면 위 조항 역시 상위의 헌법규범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등에 위반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56헌바1 사건에서 제출된 소수의견의 논증 즉 “헌법 제10조에서 확인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삭제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헌법의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도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헌법의 최고의 가치가

며, 위와 같은 확인은 가장 중요한 가치결단인 것이다. 다른 기본권들은 이와 같이 최고의 의미를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각 생활영역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다른 기본권 규정들에 대한 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의 절대적 한계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 보장 규범들 이외의 다른 규정들에 대한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설시 부분도 위와 같은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형제도가 법률 차원에서 하나의 형벌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법적 상황을 전제로 사형선고가 갖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단심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본문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존재가치 역시 법률 차원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문화되어 버릴 정도로 하위규범인 법률 차원의 사형제의 존폐에 달려 있어서 그 자체가 사형제 존치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부분이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라고 해석한다고 하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이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형제를 근거지울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라도 위 규정은 전쟁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하에서의 범죄에 한하여 사형제를 존치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범죄 일반에 대한 합헌적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모든 범죄에 대한 폐지,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전쟁범죄에 대한 제한적 인정), 모든 범죄에 대한 인정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단심으로 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형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과 특별규정으로 사형제를 언급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부분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해 보면, 헌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요건 즉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이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형제를 근거지울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 4. 헌법 합치적 제도개선 방향

이상과 같이 사형을 규정한 형벌조항,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250조 등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2항 등에 위반한 위헌적 규정입니다. 사형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중신형제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를 대체수단인 중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바, 일응의 대안은 이 사건 제청 법원의 위헌제청결정문에서도 제시된 바 있고, 수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던 사형폐지법률안으로도 구체화된 바 있어 추가적인 의견 개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사건을 통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이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문명적인 법률로 다시 태어나고, 반인도주의적인 사형을 폐지하는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5. 사형폐지 시기상조론의 문제점

(1) 사형제도 존치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사형제도



가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 형벌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범죄가 있는 한 언제까지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대부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사형폐지 시기상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른바 시기상조론은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문화수준, 국민감정, 시민의식 등이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사회가 안정되거나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사회의 완력적 요소가 감소되면 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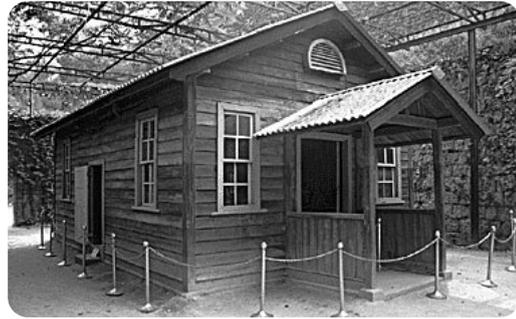
사형제도는 국가와 사회에 선행하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하고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다른 형벌과 달리 그 도입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명백하고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추호의 의문이라도 남는다면 존치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즉 사형폐지론이 주장하는 근거가 입증되어야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존치론이 주장하는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형제는 입론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론과 존치론의 근거가 모두 객관적으로 분명하

게 입증되지 않으면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시기상조론은 근본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간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확정 개념이고 입증될 수 없는 측량기준인 국민감정, 시민의식 등을 폐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그간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조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형제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특히 지난 10여년간 사형제를 폐지하는 흐름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제를 존치해두고서는 더 이상 인권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 12. 마지막으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이후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99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4차례에 걸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전세계에 전파한 근대시민혁명의 모국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할 당시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62%, 반대하는 여론이 33%였다고 합니다.



## 6.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로부터의 교훈 등

(1) 192개의 유엔 회원국 중, 사실상의 폐지국 36개 국을 제외하더라도, 103개 국이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기까지 사형을 폐지하자는 국민여론이 존치론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이었다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을 전세계에 전파한 근대시민혁명의 모국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할 당시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62%, 반대하는 여론이 33%였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민 다수가 극단적인 살인사건의 경우에 사형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사형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 충만한 인권문화와 양립할 수 없다'며 사형제가 위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7년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1965년 일반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를 폐지한 다음 1998년 군법과 전시법에 대하여도 사형제를 폐지한 영국의 경우 사형제에 대한 지지율이 1986년 74%, 1996년 54%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 자료를 통해 영국의 경우에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였음에도 사형제를 폐지하였다는 사실과 사

쳐 사형폐지법률안에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입법부 안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형제의 존치 여부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역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쇄살인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죄인들에게 극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사형존폐 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상시의 여론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이상의 변화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따르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역사, 아동노동이 금지된 역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사의 수많은 진전들은 여론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이유로 성취되었습니다.

형제 폐지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가 극악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적절한 것인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형벌 일반론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논의되어 온 고전적인 주제들입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볼 때,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점도 거의 대부분 나라의 공통된 사실입니다. 사형제도의 효과, 국민의 법감정 등에 관한 현실이 우리나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192개 국 중 139개 국이 우리나라와 달리 사형제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사형을 폐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진실에 있습니다.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역사, 아동노동이 금지된 역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사의 수많은 진전들은 여론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이유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대 전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함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2) 2009. 6. 11. 현재 대한민국 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는 사형판결이 확정된 59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이고, 사형폐지국이 되었다가 다시 사형을 집행한 국제적 선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 사형제가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사형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를 다시 심판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면 법치주의 원리의 기속을 받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더 이상 사형 집행을 유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향을 고려해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한민국이 사형제 폐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는 역사적인 문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59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두려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재판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

2009. 5.  
제청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이상갑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귀중

# 국정원 손해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 건 2008가합40668 손해배상(기)

원 고 1.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2. 주○○

피 고 1. 대한민국  
2. 오○○

변론종결 2009. 4. 24.

판결선고 2009. 5. 29.

생긴 부분 중 10분의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1. 5. 23. 설립되어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서, 방문판매업체인 소외 제이유백화점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체인 소외 제이유피닉스 주식회사 및 에스엘테크 주식회사 등 25개 회사로 구성된 제이유그룹의 모기업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주○○는 제이유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자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팀인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2004년 6월경부터 제이유그룹 관련 비리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에서는

2005년 1월경 '제이유그룹이 납품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사채놀이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비자금을 밀반출한다는 의혹이 있으며, 원고 주○○ 등이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부패를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등의 내부 보고서와 위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 관계 인사 및 경찰관, 검사,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의 근무 관서, 직위 및 성명(성만 기재되어 있음)과 금품이 수수된 날짜, 금액, 사유 등이 기재된 리스트 2매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

다. 국가정보원의 □□□□실장인 A는 이 사건 보고서가 2005년 1월경 청와대에 보고되고, 2006년 1월경 검찰에 지원되었음에도 제이유그룹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부각되어 보도되지 않자, 2006년 4월경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서 5급 정보사무원인 소외 B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제이유그룹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B는 2006. 4. 14.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인 피고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사건 보고서 중 리스트 2매를 보여 주었고, 피고 오○○은 이 사건 보고서의 리스트 중 일부 정, 관계 인사를 제외한 62명의 경찰관, 검사,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등의 근무 관서, 직위 및 성명과 금품수수 날짜, 금액, 사유 등을 옮겨 적은 후 리스트를 재작성하였다. B는 다음날 피고 오○○를 다시 만나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리스트 2매 제외)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오○○은 2006. 4. 17. 인터넷 신문인 □□□□에 "독점 제이유그룹, 검,경에 무차별 '돈 로비', 직위, 직급따라 5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제이유그룹이 경찰, 검찰의 간부들에게 무차별 '돈 로비'를 벌인 것으로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밝혀졌고, 제이유그룹의 로비는 일부 법원 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에게도 예외 없이 이루어졌는데, 경찰 간부 20여 명, 현직 검사 1명, 전직 검사 1명, 검찰청 직원 1명, 판사 3명,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및 사무관이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간부들의 근무 관서와 성명 등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액수 및 시기 등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오○○은 2006. 4. 21.까지 4회에 걸쳐 □□□□에 제이유그룹에 관한 후속 보도기사를 게재하였다.



1.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오○○은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7.부터 200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D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보고서 내용 중 제이유그룹에서 수십 명의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주었고, 해외에 거액을 밀반출하였다는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 주○○ 및 제이유그룹의 경영진은 2006년 4월경부터 검찰(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원고 주○○는 2006. 8. 2.경 제이유그룹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사기, 배임, 횡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2. 20.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7. 6. 2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검찰(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07. 3. 8.부터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재차 수사를 한 후, △△△ 등을 기소하였고, 원고 주○○를 다시 배임증죄,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원고 주○○는 2009. 3. 27. □□□□ 조합의 이사장 △△△, □□□□ 방송의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하여 금품을 공여하였고, △△△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사. 한편, 원고 주○○가 2007년경 □□□□의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

외 D와 국가정보원장인 소외 C, B와 피고 오○○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2008. 3. 13. C 및 B의 국가정보원 직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직원법이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B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오○○에게 건네주면서 '취재에 참고하고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도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고,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C가 이 사건 보고서의 유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D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보고서 내용 중 제이유그룹에서 수십 명의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뇌물을 주었고, 해외에 거액을 밀반출하였다는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갑 제6호증).

아. 피고 오○○은 2008. 3. 12. 허위 내용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백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영업상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자. B는 이 사건 보고서의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2006. 8. 31. 국정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가.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영업상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에도 피고 오○○에게 제공하는 등 이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B는 이 사건 보고서가 □□□□ 기자인 피고 오○○에게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이 보도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고서를 피고 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오○○은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로 작성하여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

### 가.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의 위법성

(1)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사업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과 비자금 조성, 비자금의 해외 밀반출, 부실한 경영 은폐를 위한 사업 확장, 정·관계 인사와 수사 및 사법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의 금품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의내용은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사업을 통한 불법적인 이익의 취득과 비자금 조성, 비자금의 해외 밀반출, 부실한 경영 은폐를 위한 사업 확장, 정·관계 인사와 수사 및 사법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의 금품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사기, 횡령, 배임 또는 뇌물수수 및 공여, 배임수증제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수집활동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설립목적이나 비공개를 특징으로 하는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과거의 국방이나 외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 통상, 환경 등 사회 전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변화되었으

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예시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 사기사건과 같이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그 피해액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정도로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명확히 구별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보고서는 대규모의 부패 및 비리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은 국가정보원의 부패 및 비리 관련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부패방지법 제56조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반 규정에 불과하고, 반부패기관협의회규정 제2조는 국가정보원장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배석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부패 및 비리 관련 사건에 미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결정 참조).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고 국가정보원법에서 그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이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정보수집활동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라고 명확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일반적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의 '기획'을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것이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국가정보원의 설립 목적, 비공개적 업무성격, 변화된 안보개념 등을 이유로 위 규정을 예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민

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의 의미는 질서유지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56조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반 규정에 불과하고, 반부패기관협의회규정 제2조는 국가정보원장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배석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부패 및 비리 관련 사건에 미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관한 정보는 대규모 사기범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과 피해이익을 비교衡量 했을 때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관한 정보수집활동이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위법한 이상, 원고들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인 규모의 사기 범행과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업의 영업 및 그 밖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그 정보가 설령 불법적인 기업활동이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련되었고 원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라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수집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등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는 제이유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및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금품수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위와 같은 의혹은 과장되었거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피해이익보다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

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사건 참조),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업의 영업 및 그 밖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그 정보가 설령 불법적인 기업활동이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국가정보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내란죄 등과 같은 특정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을 대상으로 원고들의 영업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의혹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언론 등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 관리한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그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상당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인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 자체로 인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정보원이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제공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입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손해 및 원고 주○○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인바, 이러한 손해는 원고들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사실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4. 이 사건 기사의 보도와 관련된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오○○와 B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인 B는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 기자인 피고 오○○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하고, 피고 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대부분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 신문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오○○와 B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



들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오○○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B가 피고 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하도록 당부하였으므로 B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3, 4, 7, 8,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 오○○에게 사실 확인을 당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 확인을 당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이 사건 보고서 중 일부를 피고 오○○에게 보여주거나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기사가 작성되게 된 이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인터넷 언론매체의 파급효과, 허위내용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다. 피고 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오○○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사는 제이유그룹이 경찰관, 검사, 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금품수수 및 로비활동이 실제로 있 금품을 제공하증명할 수 있음을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초사실에 의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19(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은 이 사건 보고서만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사는 구체적인 인물의 금품수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허위 내용이 보도될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공무원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제공자인 제이유그룹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오○○이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에 의한 손해(피고 대한민국)

기초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정보원의 원고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

하면 갑 제1호증으로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현출된 부분 9쪽 분량 이외 30쪽 가량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수사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유출로 인하여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원고 주○○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의 내용도 수사 결과 상당 부분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피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제이유그룹의 다단계판매업을 통한 사기범행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 및 로비 관련 의혹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인터넷 언론매체의 파급효과, 허위내용의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의 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이 사건 기사의 게재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1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오○○은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6. 4. 17.부터 피고 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판사 이용호  
판사 박기현

# 조선총독부에 대한 항의문

- 김병로 변호사

글 \_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항 의 문

본회는 함남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 화전민사건에 대하여 7월 18일 본회 중앙집행위원회 김병로 씨를 사건발생지에 특파하여 별지 조사서와 여(如)한 사건진상을 알게 된 바 당국자의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인도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차 사건에 대한 대책강구회를 압박하고 진상의 발표를 방해함에 지(至)하야는 조선인의 생존을 XX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인(認)함. 기아에 우는 피해 화전민의 학대된 생명을 위하여 만곡(萬斛)의 동정을 불감(不堪)하는 동시에 백여만 화전민이 장래를 상급(想及)할 때 한심과 의분을 금기 난(難)함으로 자(玆)에 별지 진상조사서를 첨부하여 당국의 언어도단한 처치에 엄중 항의하는 동시 좌기 사항의 실행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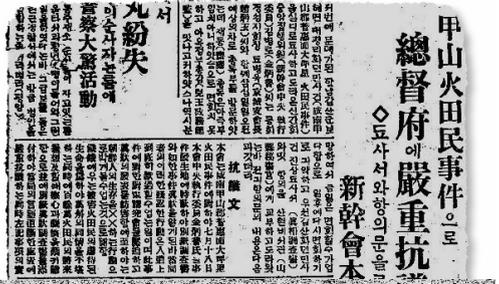
좌기(左記)

- 一. 피해화전민의 현 경작지 보존
- 一. 소실가옥, 가구, 양식에 대한 손해배상
- 一. 방화구축(放火驅逐)에 대한 직접책임자 처벌
- 一. 금후 화전민의 안전보장

1929년 8월 31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조선총독 자작 齊藤實 앞(殿)

## I

1929년 8월 31일자로 신간회에서 조선총독 앞으로 낸 항의문이다. 이 항의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김병로(당시 만41세)와 허헌이다. 둘 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면서 명성을 떨친 분들이며, 당시에는 '사상변호사' '좌경변호사' 등으로 일컬어졌다. (해방이후의 글에는 민족변호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나, 일제하에서 민족변호사란 명칭은 쓰일 수 없었다.) 3.1운동을 주도한 33인(혹은 48인)에 대한 재판에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킨 허헌 변호사, 1920년 이후 각종 독립운동의 변론에 앞장선 김병로 변호사. 이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적어도 공개적 사회운동의 실질적 구심체로 활약하고 있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일제 강점하의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개사회운동단체인 신간회가 탄생하였다. 그 신간회의 탄생부터 해소되기까지, 중앙에서 신간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간 주역이 허헌이었고 김병로였다. 1929년 당시 허헌은 중앙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김병로는 중앙집행위원회 회계장 겸 재정부장으로 가장 어려운 일인 신간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었다.



신간회의 이 「항의문」은 김병로와 조병옥 두 사람이 총독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것이다. 당시 총독은 아직 부임하지 아니하였고, 정무총감은 면회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산현이라는 비서관에게 교부하고 돌아왔다.<sup>1)</sup> 전달한 것은 「갑산화전민사건 진상조사서」와 이 「항의문」이다. (사진 A 참조)

## II

갑산화전민사건이란 무엇인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조선총독부는 화전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전민들을 주로 화전지대로부터 축출하는 시책을 펴왔다. 그러나 화전민들은 평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내몰려 화

1) 甲山火田民事件으로 總督府에 嚴重抗議. 조사서와 항의문을 교부하여, 新幹會本部에서, 조선일보 1929.9.1.

전지대에서 근근히 화전을 하며 연명하는 관계로, 아무런 생존책의 대안 없이 화전지대로부터 내몰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항의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버티기도 하는 등의 소극적 저항을 펴왔던 것이다. 전국에서 화전민들이 가장 많은 곳은 함경남도이며, 그 중에서도 갑산과 삼수 지대였다. 이전에 대표적인 오지이자 귀양처로 꼽힌 '삼수갑산'의 임야지대에 내몰려, 화전으로 근근이 생계를 영위하던 화전민들을 총독부는 다시 대책 없이 방축(放逐)하려 했던 것이다.

그 방축의 한 방법으로 갑산의 삼림을 책임지고 있던 영림서는 대표적인 화전지대인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의 평평물(릉릉곡) 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소개(疏開)시키려 했다. 대상 주민들은 모두 1천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애원하고 소극적으로나마 반항하자 영림서원들은 1929년 6월 중순 경찰을 대동하고 화전민가를 몇 십호를 불태워버리고 강제 축출시켰다. 가옥이 불타고 기아와 생존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은 주민들은 대표를 뽑아 총독부에게 와서 진정하였지만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대표들은 인근 지역의 청년회에도 호소하고, 경성의 신간회 본부에 와서 호소하였다.

이들의 호소에 언론과 사회단체가 즉각 답하였다. 언론에서는 '갑산화전민의 방축'을 '인도상 중대문제'로 크게 다루었다. 「동아일보」의 1면 사설로, "이것이 사실이라 하면 인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직책으로 하는 당국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으로 봐도 용서치 못할 행동이다" "구축당하는 화전민의 생활안정의 길(途)을 급속히 강구함도 당국의 책임이요, 영림서의 폭거를 엄격히 조사하여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함도 당국의 책임이다."<sup>2)</sup> 라는 강한 논조의 비판을 했다. 그러나 아직 이 논조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현지조사를 통한 상세한 내용과 실감을 덜 가진 탓이다. 그래서인지 "이것이 사실이라 하면" 이라 하면서, 가정법을 쓰고 있다. 신간회 본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집약했다.<sup>3)</sup> 또한 각 사회단체의 대표 27명은 <갑산화전민구축사건대소강구회>(甲山火田民驅逐事件對策講究會)을 조직하고 안재홍 등 27인을 선정하여 진상조사원을 파견기로 결의했다.<sup>4)</sup> 그러나 총독부의 대응도 신속했다. 7월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동 위원회는, 종로서 고등계로부터 "위원회를 금지하는 동시에 금후(동 위원)회로서의 일체 행동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

그 이유인 즉 첫째, 그 명칭이 불온하다는 것, 둘째, 아직 사실이 어떠한지 모른다는 것을 들어, "만일 앞으로 무슨 행동이 있다 하면 단호한 처치를 한다"고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동 위원회에서 실제 조사차로 떠나기로 예정된 인사도 출발하지 못했다.<sup>5)</sup>

신간회 본부에서는 일차 신간회 북청지회에 사실진상을 조사토록 지령했지만, 시일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여론조성을 하고 대책강구를 긴급히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7월 18일 오후 4시에 긴급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토의를 진행한 다음, 당일 김병로 씨를 조사위원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김병로가 서울을 떠난 시각은 당일 오후 10시 55분이었다. 실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이기에 총독부

로서도 위의 대책강구회의 그것처럼 미처 제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김병로는 혼자 떠난 것도 아니었다. 김병로의 현지조사에는 무려 7인의 동행이 있었다. 동아일보 특파원 박금 기사는 처음부터 김병로와 동행했다. 「중외일보」특파원 정인의 기자, 북청의 김영수와 김광, 갑산에서 동행했던 김은서, 특별히 동행을 신청해왔던 갑산군 운흥면의 청년 한남형 등이었다.<sup>6)</sup> 당시 한국의 사회단체의 중심체였던 신간회의 간부이자 '변호사'로의 성가가 높았던 김병로 한 사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 둘이 가세하고 보니 이들의 존재를 지방의 경찰서나 영림서에서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 더욱이 변호사와 언론인은 모두 사실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이 아니던가.

이들이 간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서울에서 해산진까지는 열차로, 해산진에서 목적지까지는 200여리의 길을 "하루도 비가 개는 날이 없이 수목이 씩어 진흙으로 된 산을 넘고 넘어 쉬지 않고 걸어야 했고, 거기다 경찰과 일본 국경수비대로부터의 신변의 위협과 자연의 위협에까지 힘든 여정을 강행군해야 했다."<sup>7)</sup>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현장에 이르러 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실지조사를 하였다. 다시 고생 끝에 김병로 일행은 27일 밤 8시 30분 경성역에 도착했다. 무려 10일에 걸친 긴 여정이었다.

### III

신간회 본부에서는 바로 다음날인 28일 김병로의 진상조사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sup>8)</sup>

#### 결의사항

- 一.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발표
- 一. 29일 하오 8시부터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진상조사보고연설회를 개최
- 一. 피해민구제와 책임당국에 대한 항의는來중앙상무위원회에서 결정

1) 甲山火田民事件으로 總督府에 嚴重抗議. 조사서와 항의문을 교부하여, 新幹會本部에서, 조선일보 1929.09.01.  
 2) 甲山火田民의 放逐 人道上重大問題, 동아일보 1929.07.10  
 3) 新幹會奮起 真相을 調査, 형사고소라도 할터이라고 惠山鎭營林署員 火田民家 衝火事件, 동아일보 1929.07.13  
 4) 甲山火田民을 營林署에서 放火, 驅, 東亞日報 1929.07.17  
 5) 對策講究會 委員會禁止, 甲山火田民 驅逐問題, 東亞日報 1929.07.21  
 6) 樞村秀樹, "갑산화전민사건(1929년)에 관하여," 淺田喬二 외 7인, 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신서, 1984, 205쪽.  
 7) 김병로, "연재:수상 단편," 김진배, 가인 김병로, 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288~294쪽 참조.  
 8) 報告演說會와 責任當局에 抗議. 조사위원 金炳魯氏 보고듣고 火田民事件과 新幹 會決議, 조선일보 1929.07.29.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결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신간회 측의 진상조사보고를 위한 연설회는 곧바로 종로경찰서에 의해 금지 당했다. 그 이유인 즉 『신간회가 주책없는 말을 하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로서 그 사건의 보고를 가지고 있음으로 그와 반대되는 보고강연을 허락지 않는다』는 모호한 것이었다.<sup>9)</sup> 이어 8월 내내 진상조사의 공개에 대하여는 계속 금지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간다. 다른 한편 이 시점에서 언론의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7월 말 8월 초에 걸쳐 각 언론은 진상에 대한 보도와 비판적 사실을 연속해서 실었다.

우선 「조선일보」는 “사건 발생 이후 제일 먼저 이백 여리의 산길을 도보로써 모든 무시무시한 위험을 무릅쓰고 만목참담한” 현지에 도착하여 진상조사를 한 제 일보를 7월 23일에 냈지만, 곧 압수당하고, 실제조사담사기는 또한 하루를 연재하고 중단을 강요당했다. 그런데 신간회 조사결과와 기자의 조사내용이 일치함에 힘입어 7월 30일자에 〈소실가옥〉 피해자의 본적, 성명, 가족, 소실간수를 일일이 적시하였다. 특히 현장에 왔던 영림서원과 순사들 17명의 명단과 소속까지 정확히 제시하였다.(사진 B 참조) 이는 김병로의 조사와 조선일보의 조사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전체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당시 상황을 수자로 보이면 불에 탄 곳은 평평물과 대송가동 두곳이니 평평물은 6월 16일부터 동 18일까지 삼일동안에 평평물에서 63호가 타고 3호가 파괴되었으며 동 18일부터 19일중까지 대송가동에서 10호가 소실되었으며 파괴가 4호인 바...<sup>10)</sup>

동아일보는 이미 갑산사건에 대하여 “갑산화전민의 방축 인도 상 중대문제”(1929.7.10)라는 제1면 사설을 기재한 바 있으나, 특파원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다시 갑산화전민사건에 대하여”<sup>11)</sup>(1929.7.31) 라는 매우 비중있는 사설을 실었다.<sup>12)</sup> 두 사설의 논조는 우선 첫줄부터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사설에는 “...가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80여 호의 인민가옥을 소훼하였다는 사건으로 세간을 경악케 한 소위 갑산화전민사건은 본사 특파원의 보고에 의하여 그 진상이 판명되었다.”

그 결과는 최초 주민대표의 진정한 바를 확인하였고 따라서 당국의 무사려한 처치를 폭로하였다.”고 쓰고 있다. 실로 현지조사의 뒷받침으로 힘 있는 논조를 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국의 진상발표 금압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꾸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문제, 인도 상 중요문제에 대하여 공정한 비판과 여론 환기의 기회를 방알(防閑)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의 여하를 의심치 아니치 못할 태도다. 이러한 금압의 결과는 일층 민중의 의혹과 분노를 증장할 것뿐이니 실로 유해무익한 금압이려니와<sup>13)</sup>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외일보는 당시의 대표적인 언론이다. 이 모든 언론이 특파원의 현지조사를 토대로 각종 보도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박금 특파원의 「갑산화전민총화답사」를 전11회에 걸쳐 보도했다.<sup>14)</sup> 조선일보 역시 7회의 연재를 하기로 예고하고 제1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는 막상 현지 피해실태에 대한 부분에 이르러 삭제시켰다. 조선일보의 경우 2회로 연재를 차단했다.<sup>15)</sup> 한편 신간회는 연설회와 보고의 배포가 금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상무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一. 갑산화전민사건 대책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긴급 발표하고  
항의위원으로 김병로 황상규 이관용 3인을 선거하여 다음 조항에 대해  
총독부에 항의키로 하다.

(가) 방화 구축에 대한 질문

(나) 피해화전민에 현경지 배려

(다) 소실가옥 가구 양식에 대한 손해배상

(라) 직접 책임자의 처벌

(마) 5백여만 화전민에 대한 금후 주의

一. 언론압박에 관하여

갑산화전민사건 항의위원들에게 일임 항의하기로.<sup>16)</sup>

갑산사건에 관한 신간회의 공세는 8월 내내 이어졌다. 그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 신간회 지회에서 갑산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일제의 행위를 규탄하는 각종 행동들이 이어졌다. 그에 대한 일제 당국은 다음과 같이

9) 갑산화전민사건 보고연설도 금지/모호한 이유로 금지하여/작일 종로서에서, 조선일보 1929.07.30

10) 瀑布洞과 宋哥洞 燒失戶數만 七十三 파괴가옥도 칠호나 된다. 甲山火田民事件詳報//十七名의 一行, 현장에 왔든 영림서원과 순사//甲山火田民事件 報告演說도 禁止, 모호한 이유로 종로서에서(圖)사건이 생긴 「평평물」부근, 조선일보 1929.07.30

11) 다시 甲山火田民事件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9.07.31

12) 이 사설은 조선사상통신에 그대로 일문으로 번역게재되었다. 再甲山火田民事件に就いて, 朝鮮思想通信社, Vol.- No.1016 [1929]

13) 다시 甲山火田民事件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9.07.31

14) 평평물물차자, 甲山火田民衝火地踏査, 北國二千里 無色한 勝地江山 [제1회, 全10회] (本社特派員 朴錦 手記), 동아일보 1929.08.02

15) 한홍정, [국경전문기. 갑산사건 답사를 마치고(전7회) 1929.08.09~1929.08.19, 조선일보 1929.08.09

16) 新幹會 本部에서 第7回 常務委員會, 東亞日報 1929.08.05; 責任者 處罰과 損害賠償 請求, 당국에 항의하기로 결의, 火田民事件과 新幹會對策, 조선일보 1929.08.08

대응했다. 첫째, 언론의 보도를 엄금하는 방침. 갑산화전민사건에 대한 총독부의 언론탄압은 당시의 통례와 비추어 보아도 특이할 정도로 빈번했다.<sup>17)</sup> 이는 갑산사건이 총독부의 취약점을 직접 건드리는 것인데다, 조선 민중이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둘째, 갑산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각종 집회의 무조건적 금지이다. 그에 대해서도 종로경찰서 등이 금지사유로 내건 것들이 매우 '모호'하고 '궁색'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셋째, 총독부에서는 참으로 이례적이게도, 독자적으로 진상을 조사하여 공표했다. 「갑산사건에 관한 진상조사결과발표」라는 제하의 발표였다. 발표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의 친일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함남 갑산군 보혜면 대평리 룡통곡에서 영림서직원이 경찰관 입회하에 화전모경자에 철퇴를 명하고 그 가옥에 방화하였다는 풍설이 전하자 소위 피해자의 대표라 자칭하는 자가 본부(本府)에 진정하였으므로 총독부에서는 곳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소할 영림서장 급 현장 지휘의 지위에 재한 삼립주사를 본부에 출두케 한 후 종종 당시의 사정을 청취한바 사실은 모든 풍설과 소위 대표자의 진정과는 전혀 상위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작 12일 산림부에서는 이래(爾來) 월여(月餘: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공하여 신중히 조사한 결과를 하기와 여히 발표하였더라.”

거기서 총독부 산림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一. 관헌이 방화 운운은 낭설·와전에 불과
- 一. 사실은 주민이 양해 후 각자 빈집(空家)에 방화한 것
- 一. 기정방침은 엄연 불변<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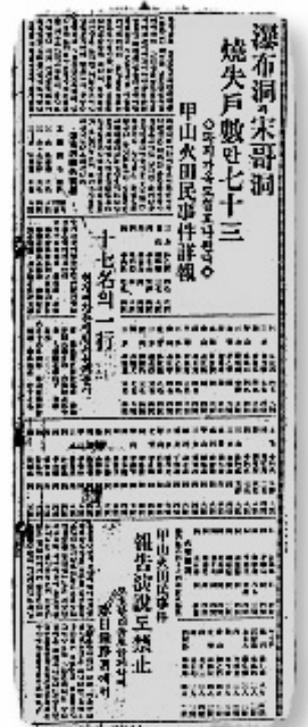
언론·집회의 금압에 더하여 독자적인 진상조사결과까지 발표한 것은, 조선의 사회단체와 언론기관들이 갑산사건에 대해 보도의 홍수와 논의가 분출하는 상황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욱 독자적 진상발표라는 극히 예외적인 발표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김병로 일행과 언론보도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가진 파급력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신간회 본부는 다시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갑산화전민사건항의문”을 통과시켰다.<sup>19)</sup> 이것이 제일 앞에 나온 그 내용이다. 당국의 “언어 도단한 조치에 엄중항의”라는 불경한(?)문구까지 대담하게 삽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별지 진상조사서”에 담긴, 부인할 수 없는 현장조사였다.

## IV

갑산사건의 배경, 경과, 그리고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역사학자에 계 미룬다.<sup>20)</sup> 여기서는 변호사 김병로의 활동의 의의에 대해 언급해보자. 갑산이라는 변방 중의 변방은 갑산화전민사건을 계기로 서울의 신간회와 곧바로 연결되었다. 신간회는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국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를 필요로 했다. 그 진상조사에는 법률가가 적임이었다. 언론인의 조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가는 상대의 증거탄핵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하게 되므로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직업정신과 전문적 역량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일제하의 변호사라는 직책의 힘이다. 변호사란 직책은 일제의 경찰이나 영림서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갖는 것이며, 검사를 방문하여 따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변호사의 직책을 진상규명을 위해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운동 및 민족운동에서 법률가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한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갑산화전민사건의 진상조사였다.

김병로 개인으로서도 갑산화전민사건은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가인은 대법원장을 마친 뒤 경향신문에 1959.3.20~1959.4.30까지 「수상단편」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구술하고 있다. 그 중 「신간회의 조직 및 투쟁」에서는 장년기의 열렬한 변호사로서, 민족운동의 간부로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으며, 그 때의 ‘감투정신을 발휘한 사례’ 중에 ‘백두산 화전민박해사건’에서의 현지조사의 경험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sup>21)</sup> 김병로 자신으로서도 가장 기억 속에 오래 남은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17) 梶村秀樹, 앞의 책, 207쪽.  
 18) 甲山事件에關한真相調查結果發表, 毎日申報 1929.08.13  
 19) 新幹會本部 第9回 中央常務執行委員, 東亞日報 1929.08.24  
 20) 필자가 확인한 바 갑산화전민사건에 대한 것은 위의 梶村秀樹의 논문이 유일하다.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7, 175~179쪽에서는 “갑산화전민방화방축사건에 대한 항쟁”이 실려있다.  
 21) 김진배, 앞의 책, 288~294쪽.

#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정세현 초청, 7월 월례회

정리\_김영준 회원



**심재환**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 경색 추이, 본질적 흐름에 대하여 식견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정장관님 약력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정장관님께서 서울대에서 국제정치 박사를 하셨고요 계속 연구원 생활을 하시다가 77년도에 통일원에 들어가셔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나오시기까지 근 30년 가까이, 한 26,7년 실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가르치시는 일이나 연구하시는 일, 세종연구소 같은데서 연구도 하셨지만. 또 두루 실무에서 직접 일을 담당하시는 일 뿐만 아니라 총 책임지는 일까지 전부 담당했기에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이론 부문에서도 일정한 업적을 쌓으셨기에 그런 것이 어우러진 많은 식견을 저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민화협 상임위원 하시다가요 지금은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좌교수, 아태재단 부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정세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에 나왔지만 저는 77년 통일원에, 그때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공산권 문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통일원 아니면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노동신문이나 인민일보 들고 다니면 붙잡혀 들어가는 시대였거든요. 논문을 쓰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연구직 공채시험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논문쓰고 난 학교로 간다.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학위는 끝났는데 학교에선 불러주질 않고, 우스운 얘기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란 게 조금 새로 들어온 교수는 자기 담배심부름도 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인상이 만만찮고 보이는 것도 북쪽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웃음) 그래서 합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 생활이 싫어서 한때는 관복을 벗고 민간연구소로 나간다고 나갔는데 팔자가 그게 아니었는지, 거기서도 오랫동안 있진 못하고 다시 또 정부로 들어가야만 하는, 뭐 불러주니까 갔지만, 있고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다시 관복을 입었다가. 김영삼 정부시에는 제가 청와대 통일 비서관 한 4년 가까이 일했어요. 그때 당시 남북관계가 통미봉남으로 꼬여서 참 일없이 바쁘게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만 어쨌건, 그때 바로 핵문제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 핵문제의 핸들을 잘 못해서 통미봉남으로 빠지고 나중엔 미북관계는 활성화되는데 남북대화는 안 이어지니까 계속 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95년 쌀지원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버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장관으로 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계속 남북관계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1. 현재의 남북관계

지금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개성공단 저쪽은 대화 아닙니다. 계속 이쪽에선 대화자를 붙이고 싶어하는데, 회담자를 붙이고 싶어하는데 북쪽에선 계속 접촉이라고 하고. 북쪽에서도 회담이란 표현을 써야 회담이고 그거는 기초발언하고 환영만찬, 환송만찬 등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관련해서 네 번 접촉이 있었고 군사분계선 도로선상에서 쪽지 주는 접촉 두 번 있었고 총 여섯 번 있었는데 그거 말고 회담다운 회담이란 게 없습니다. 71년 8월달에 적십자 실무접촉 실무회담 이후에 이명박 출범 직전까지 정확히 590회의 남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98회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91회는 통일부장관으로 2년 5개월 있는 동안에 91회의 회담을 치러냈습니다. 저는 실무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해서 과장급 회의까지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회담 지시까지 했고 그 중에 8번은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제가 직접 했고 총 21번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 제가 했고, 회담운영에 총 책임을 지고 회담운영을 해본 경험이 98회가 그래요. 남북 회담에 있어 약 1/6을 체험하다 보니까 회담을 전후해서 주고 받는 소위 말들의 흐름이라는 게, 맥이랑든지 쓰는 단어 같은 거 보면 '이건 잘 되겠구나', '이건 안 된다' 하는 게 그야말로 형사의 육감처럼 와서 붙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무당이 됐나' 싶은데... (웃음)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서 뭐 연구, 북한 연구 또 대화실무, 정책결정입안, 회담 지휘, 대국민 여론 조성 등등 경험을 가지고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보니까 이걸 점점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나. 어제 그 폴란드 발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 돈으로 핵무장만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고 한테 참 가관인 것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그게 평균 국민들의 생각 아니냐, 국제적으로도 대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며 대통령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잖느냐 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아주 심층정보를 입수하게 돼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 얘기해선 안 되고 정말 전략적 계산을 해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말하듯 지나가는. 대

어제 그 폴란드 발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줬다. 그런데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 돈으로 핵무장만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고 한데 참 가관인 것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그게 평균 국민들의 생각 아니냐, 국제적으로도 대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며 대통령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잖느냐 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통령이 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의혹이 있다. 평균적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습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제가 회의에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시나리오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비서실 작성 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답니다. 근데 그걸 안 써버린 거예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별로 그렇게 국제정세도 잘 모르고 파고다 공원이나 종묘 앞에서 얘기하는, 또 반핵 반기 무슨 대회하는데 깃발 들고 가면 3만원씩 불러갈 수 있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그런 수준의 얘기를 대통령이 외국까지 나가서 하난 말이에요. 그런데다 김정일은 무슨 가장 폐쇄된 사회지도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답에 이해가 안가는 나라다 그런 얘기는 우리도 기본 나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할 때 이해가 안가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만나고 싶지 않단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건 남북관계는 이번에 폴란드 발언을 계기로 해서 루비콘 강을 건넜나 그런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태는 점점 악화돼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5월 초에 김대중 대통령 중국방문을 수행했어요. 특별히 가기도 도와줄 것도 없는데 가자고 해서 갔서 소위 외교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왔는데 외교부 실무관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가 네단계로 변하더라. 첫째 당선되니까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 재밌는 얘깁니다. 아마도 기업인, 속된 말로 장사꾼이니까 남는 장사를 할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남북교역이란 것이 핵무장 해버렸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교역도 못하게 됐습니다. 쌀 비료 줬더니 그 명의 돈을 가지고 핵무장을 해버렸다는 식으로 해버려서 인도적 지원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 마인드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론 남북교역을 통해서 상업베이스로 교역을 해서 제법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개성공단도 지금 개성공단 들어가서 돈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 월 60 불짜리 노동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물건을 사다가 여기다 팔면 아직까지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체결해놨고.

북남관계에 대한 그런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담엔 관찰을 하더라 이거야. 이게 아난가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 같더라. 인수위 때부터 관찰을 하더라. 비핵개방 3000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실망을 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 반감을 갖기 시작하더라. 중국쪽에서 말하는 북한의 단계는



네단계였어요. 기대 관찰 실망 반감. 근데 이 반감을 갖게 된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부정, 무시 입장이 확실해지면서 반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했기에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소위 아무데나 특히 대외적으론 그 사람이 문서행위를 하지 않아요. 대외적으로 하는 문서행위는 김영남이 합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 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제쳐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 26일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합참의장은 북한은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얘기했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 봅니다.

전 거기에서 하나를 보태서, 지금은 완전히 적대상황입니다. 적대상황으로 진입하게 된 계기는 작년 추석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이쪽에서 개념계획 501을 작전계획 501로 바꿔야 한단 얘기를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 공공연히 얘기하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가장이 산소마스크 걸고 있는 상황인데 옆집에선 저 영감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집을 싸게 후려쳐서 먹을 것인가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게 용서가 되겠는지. 그때부터 개성공단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조치가 나오기 시작했고 군부가 나서서 남쪽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작년 11월부터, 11월 1일부로 아주 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출입을 어렵게 만들고, 6.15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특혜를 못 주겠단 얘기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선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실망. 그담에 기본합의서가 잘됐다, 6.15 공동선언은 부정을 하진 않았지만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써 협의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행여부를 협의해 봐야한다, 거기 표현 몇 개는 잘못됐다, 뭐 이런거죠. 거기서 반감이 생기고 적대로 돌아선 건 김정일 위원장 건강 유고와 관련돼 작계 5029 논의 등등이 오늘날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기회를 논할 때 어떤 걸 원인으로 인정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8,9년 전에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곳에 생긴 평화공원에 갔는데, 언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냐면 원폭이 떨어진 날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인도적 지원도 했고 경험도 해봤지만 그게 다 핵무장으로 되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경험도, 인도적 지원도 안하겠단 얘기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관계는 절대로 이 상태로 가지를 않고 캠프벨이 정치부로 집무를 시작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미국의 대북 인게이지먼트가 시작될텐데 말입니다.



나고 애들이 앙상해지고. 거기서부터 보니까 일본사람들은 참 미국 사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대량살상을 일으키고도 계속 우리에게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생기게 생겼다. 아니 그게 저들이 저들도 식민지 하다 식민지 쟁탈 문제를 놓고 싸움이 붙은 것 등등의 얘기를 안하고 폭탄 떨어진 것부터 얘기하니까 완전히 거기서보니까 일본이란 나란 정말로 피스러빙 컨트리, 피스러빙 네이션, 피스러빙 피플로 돼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우리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 논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원이 소위 원인을 제공해서 일이 이렇게 꼬일 수 밖에 없게 해놓고, 작년에 북한이 적대행위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설명을 시작하니까 모든 긴장조성 책임은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 계속 얘기를 해 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이 신문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또 한가롭게 그거 가지고 입씨름 할 수 있는 시간있는 사람들은 종이 신문밖에 볼 줄 몰라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젊은 사람들은 종이 신문 볼 시간도 없고 또 인터넷으로 정보 다 보고 또 그 사람들은 바빠서도 안아가지고 이런 시사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아다니는 얘기는 정부가 가르쳐 준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가선 정부가 퇴로를 찾는데 굉장히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장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논리로 설명한 것인가 무슨 논리로 소위 유턴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인가. 근데 그런 고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한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저렇게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나라다 이런 말은 상대 안하겠단 얘깁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했고 경험도 해봤지만 그게 다 핵무장으로 되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경험도, 인도적 지원도 안하겠단 얘기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관계는 절대로 이 상태로 가지를 않고 캠프벨이 정치부로 집무를 시작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미국의 대북 인게이지먼트가 시작될텐데 말입니다. 미국은 계속 그렇게 안 나갈거고 북한도 미국관계에 대해선 서두를 겁니다. YS 때 클린턴이 나중에 몸이 달아가지고 결국에는 됩니다.

미국 양자협정 시작이 되지 무역에서 계속 만난다고 그러지 대주주를 불러왔다는 것도 호재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오르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적인 접촉이지만 이미 거의 알려진 비밀처럼 불만의 표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YS는 핵을 가진 자와는 약속할 수 없다는 멘트를 날리니까 북한에서 즉각 그

동안에 했던 남북대화 모조리 스톱, 해서 총리급 회담 이후 계속 되던 각종 공동위원회, 국가위원회, 장관급 참모급 회담이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통미봉남이 시작되죠. 통미봉남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그때 업무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상황을 보니까 미국관계는 앞서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는지. 어떻게 만나자고 해야하는데 북한에 편지 보냈는데 말이 없고. 그래서 내일 올 것인가 모레 올 것인가 안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만 하는 그런 식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디다가 한번 지금 상황에서 날짜만 바꾸면 됐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도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웃음)

## 2. 비핵개방 3000과 북한의 변화

어쨌건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개방 3000에 실망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 그것 때문에 반감 적대국까지 돌아서고 그랬는데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선 북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작년 5월에 제가 평양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회의를 하면서 민화협 중심으로 북한에 나무 심는 운동을 해서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나무심으러 갔더니 북쪽에서 작심을 하고 당국자가 상당히 남쪽에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비핵개방 3000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뭘요 그랬더니. “아니 비핵이야 우리하고 미국 사이의 문제지 어떻게 남쪽이 그걸 북남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아무 것도 안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또 개방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어떻게 조건화합니까.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3000은 참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아서 경제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테러지원국이다 뭐다 딱지를 붙여놓아서 웬만한 나라들 우리랑 거래도 못하고 틀어막은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우리도 남만큼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어떻게 남쪽이 우리를 3000불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야.

우리가 뭐 신탁통치자들입니까 식민입니까. 이런 얘기가. 저쪽이 기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가



기자들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기자는 기자끼리, 수행원은 수행원끼리, 대표는 대표끼리 친합니다. 기자, 수행원 몇 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에요. 벌써 그게 2002년,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저쪽 사람들이 남쪽 와보고 잘사는 것 못사는 것 다 봤죠.

되죠. 또 하나, 아니 남쪽은 뭐 앞으로 십년 후에 4만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3000불이나 먹으란 겁니까. (웃음) 말은 된다.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가서... 국내에선 남쪽에선 내가 정부 비판도 하고 정부 대북정책 잘못됐다 하고 그러지만 북쪽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 그거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원래 취지가 그건 아닐거예요. 말하자면 사실 연계론이죠. 비핵화되고 북한이 개방한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3000분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시작하겠다. 계획도 세워주겠다. 계획 세워준다는 게 가장 그 사람들 기분 나쁜 얘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원장들이 원장만 되면 북한의 경제발전계획을 우리가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북한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계획하면 사회주의 국가인데.

비핵개방 3000을 연계론이라고 했다고 병행론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 얘기를 믿어야 합니까.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행론으로 보고 그쪽에서도 너무 반박하지 마라, 그리고 병행론으로 몰아가야하지 않겠느냐, 병행론으로 굳혀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단정적으로 예상하지 말고 기다려 보자고 달래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저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비핵개방 3000도 기분 나쁘고, 장군께서 직접 서명하신 문서를 그렇게 몽게 버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남쪽과 대화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즘 그쪽 말투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0년대까지 남북 대화 할 때를 보면,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체제선전하려는 우리 인민들이 선택한 체제는 절대 흔들림 없이 그런 얘기를 토포와 관계없이 얘기를 해댈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수령님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요. 90년대에는 남북대화를 한다면 어떻게 공갈을 쳤느냐. 지금 북쪽 관련 아주 강한 말씀을 쏟아내는 이 모선배는 그 시절에 남북대화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선생, 똑바로 하시오. 선생 배때기에는 칼 안들어가는가" 봐준다, 고분고분해라 이거죠.

기자들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기자는 기자끼리, 수행원은 수행원끼리, 대표는 대표끼리 친합니다. 기자, 수행원 몇 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에요. 벌써 그게 2002년,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저쪽 사람들이 남쪽 와보고 잘사는 것 못사는 것 다 봤죠. 저쪽 회담대표 수행원들이 "왜 서울-평양회담을 난데없이 남쪽 장관이 개성공단 회담으로 만들어서. 나 서울구경을 못하게 하느냐. 문산까지 밖에 못 가

잖소"라고 합니다. 서울 와 보는 게 그 사람들 자랑거리였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에서 많은 역할을 하던 교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이야기를 듣기를 "통일되면 나 하나쯤이야 김선생이 봐주지 않겠소. 우리 만난 지 7~8년 넘었지" 이럽니다. 자식놈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보낼 테니까 잘 좀 살펴주소. 다 못살 거 뭐 있소. 자식놈이라도 잘살게 해주고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해줄 수 있겠소?" 이리 더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 3.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의 중요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라는 것이 북한이 설사 동독처럼 붕괴하더라도 동독이 서독에 넘어갔던 것처럼 북한이 남측의 주머니에 못 들어오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때는 소련조차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동독을 챙길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중국이 승승장구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우위까지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자기 주머니에 넣도록 가만 있겠습니까.

김정일이 갑자기 죽어도 그렇게는 안 되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인민들이 체제에 대해 충성도, 응집력이 떨어진다, 옛날 같지 않다, 몸만 거기 있지 마음은 귀순했다' 하는 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쌀 안주고 비료 안주고 UN제제 강화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록강 두만강 이남은 이명박 정부식의 새로 편입된 영토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하는 상황이 올수록 국제간섭은 더 심해집니다. 지하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웃 아닙니까. 중국에 붙은 나라가 열 몇 개가 있지만 중국의 정치경제중심지인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이 북한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중요도의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관할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 해야 하기 때문에 먹여 살리다시피 하면서 북한이 패악질을 벌여도 응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 중에는 국제정치학 박사도 있고 오랜 외교관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어째서 북한을 압박하면 바로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6.15에 대해 공식적은 인정한다고 해도 누가 얘기해도 못 믿겠습니다. 남쪽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조건에서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전달해주십쇼.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장관을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들

가서 5자 회담 받으라고 하니, 요즘 중국은 완전 미국 앞잡이가 돼서 우린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남쪽은 어떻게든 당신네를 이해하려 하지만 남의 나라 치고 중국만큼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6.15에 대한 존중의지를 비치지 않는 이상 저쪽의 대남 사업은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경협도 어려워지고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우리 입지도 없고, 핵 문제 해결을 조건화 할 게 아니라 핵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생각하라, 김하중 장관이 중국 있을 때니까 잘 알겠지만 남북관계가 좋을 때 이를 계기로 삼아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얼마나 유도했느냐. 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해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략을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쳤느냐. 중국하고 손잡고 공동성명도 이끌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 수순을 밟도록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제 자량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권이 바뀐 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빼고 5자 회담을 하자며, 북한에 설득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채널이 없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테이블로 들어오도록 우리한테 부탁할 정도니까 남북관계가 상당히 깊은 관계로 들어간 것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캘리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한국정부가 강하게 푸시를 해달라며 부탁을 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왔어요. 외교부 장관실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실까지 내려 오는 거죠. 또 특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대사를 보내서 이번 회담에 대해 꼭 얘기를 해주십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갈 때 미국도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미국에 대한 발언권도 생긴다는 겁니다.

가서 5자 회담 받으라고 하니, 요즘 중국은 완전 미국 앞잡이가 돼서 우린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남쪽은 어떻게든 당신네를 이해하려 하지만 남의 나라 치고 중국만큼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럼 별받는다고, 보위부가 다 녹음을 해서 보고가 되겠죠. 그래? 그럼 중국이 북쪽 편을 들게 하는 방법이 있지 그럼 러시아를 끌어 들이면 되겠네. 못 들은 척 하더니 나중엔 7월에 회담하면서 이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은 계속 5자 회담 얘기를 하니(5자회담 확실히 설득해달라고 하니) 심부름을 했죠. 장관급회담 공동 선언문에다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다자대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남북이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4자 회담을 받는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암시를 하겠다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회담에 나오도록 유도하는데 쌀과 비료가 중요했죠. 장관이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국회

중국에게도 미국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의장국인 당신이 역할을 해달라, 일본이야 어차피 미국 따라가는 나라니까. 러시아는 남북관계 좋아지면 가스 팔아먹고 철도 지나가면 개평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아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서 설득하면 되요 야당은. 그런 식으로 쌀과 비료가 갈 때, 6자 회담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4자 회담은 어찌될지 모르지만 5자든, 6자든 언젠가는 나와야 할 거다.

계속 장외에서 기 싸움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경제난 해소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더 이상 못나간다. 그러니까 국제회의 나와서 미국과 협상을 하되 당신들은 미국과 말싸움할 때 단어에 집착이 있다. 단어 중심으로 생각해서 계속 다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중을 읽으려면 문맥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어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미국과 오랜 기간 외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와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의 차이를 읽을 줄 안다. 진짜 의도에 집중해야지 공식적으로 하는 말, 보수층을 의식해서 뱉는 말에 집착해서 말싸움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회담이 혹시 열리거든 남측 수석대표와 계속 얘기를 나눠서 그런 의도를 읽어봐라.

미국에 당신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측 대표단이 읽어내는 속내가 있을 것이다. 잘 알면 오차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4월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후, 우리 측 수석대표를 불러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말을 걸어오거든 엄두하고 얘기를 나누라고. 회담장 밖으로 나오면서 슬그머니 빈방으로 밀어 넣더라는 겁니다. 얘기 좀 하자고. 미국의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남측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외를 받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수석대표끼리 의견교환을 해서 미국의 의도를 읽어 성과를 내라고 했더니 방에다 썩 밀어 넣고.

차관급 회담 할 때도 이쪽에 오면 환영만찬을 해줘야 되고, 경제회담이지만 뒤에 조율하는 사람들, 수행단 들간의 만남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메시지를 줘요. 이런 얘기를 해 줘라는 식으로. 쌀과 비료가 가는 동안 상당부분의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정동영 장관 시절 9.19 공동성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이전부터 축적된 북측에 대한 호의와 신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남쪽의 말을 들으니 손해는 없다 것을 알게 되고, 기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을 먼저 설득해서 너무 센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다는 것을 가지고 미국사람들을 설득해서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미국도 일방적으로 압박만 말고 요구조건을 낮추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게도 미국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의장국인 당신이 역할을 해달라, 일본이야 어차

바로 대통령이 거기서 발언하는 그 시간에 <LA 타임즈> 7월 5일자에선 북경특파원이 취재해서 최근 북한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외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동안 계속되어왔던 개혁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

채찍 먼저 휘두르면 북한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근을 쓰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 미북간의 접촉이 활성화되고 미북대화가 일상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텐데, 금년 가을부터 그렇게 되어 합니다.

피 미국 따라가는 나라니까. 러시아는 남북관계 좋아지면 가스 팔아먹고 철도 지나가면 개평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아 진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 4.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쨌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스스로, 그야말로 자기가 타고 온 배도 태워 버리고 건너 가야 할 다리도 끊어버린 겁니다. 건너갈 다리는 인도적 지원이고 경험인데... 남북간의 대화는 그 다음이죠. 개성공단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성공단) 인건비 문제도 615 공동선언 내용을 존중한다는 얘기만 있으면 그러면 혜택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말만 나가면 거저는 다시 우리가 밀어부칠 수 있습니다. 615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북측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불 그건 구분이 없고 올리긴 좀 올리자. 중국보단 좀 싸게 하자. 그래서 전 한 100불까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불은 쥐야하지 않나. 그것도 처음에 그 사람들이 300불 불렀어요? 300불 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장급 회담 때 얘기인데. 국장급한테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을 가보라고 그래라. 중국 베트남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뜯어서 개성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300불 불려서 되겠는가 가서 한번 보라 그래. 갔다 왔는지 65불을 부르더군요. 그런 것이 개혁개방입니다. 지난 10년동안에 쫓던 것이 뭐 핵무장만 했지 북한 사회 변한 게 없다는 말도 참, 참모들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대통령이 거기서 발언하는 그 시간에 <LA 타임즈> 7월 5일자에선 북경특파원이 취재해서 최근 북한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서 외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동안 계속되어왔던 개혁이 완전히 멈춰 버렸다. 그 얘긴 뭐예요. 지난 10년동안 소위 핵무장만 한 게 아니라 남북 경험이 활성화되고 교류관계가 그야말로 보편화되는 와중에 북한사회가 개방개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원인을 제공함으로 해서 북한정부가 강력하게 나갈 수 밖에 만들고 남북관계 일선에 북한군부가 전진배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소위 <뉴욕타임즈>가 2003년 9월 13일자에서 얘기했던 패턴의 자본주의화, 뉴욕타임즈가 2003년 11월 20일자에서 얘기했던 소위 마켓 이코노미, 시장경제화

자본주의화의 행보가 멈추서고 있다는 것이 7월 5일자 LA 타임즈 보도인데, LA타임즈는 미국서 월스트리트 타임즈 다음으로 보수 아닙니까.

뉴욕타임즈가 가장 진보적이라면, LA타임즈마저도 지난 10년동안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개방개혁을 했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것이 끊어졌다. 군부가 상황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럼 군부가 상황을 장악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 나는 작계 5029. 남쪽에서 작계 5029 시작될 수 있다. 그럼 군사작전이 시작될지 모르는데 그럼 모든 것을 선진지휘차원에서 물론이지만 국방위원회가 그야말로 국가비상대책 상임위원회처럼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한다는 식으로 됐고 군인들이 결정권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15쯤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협정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언급만 하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소위 가시돌린 말, 북한을 자극했던 말도 다 치유될 수 있고 그 답에 남북관계는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4월 5일날 체코 프라하에서 했던 연설이 바로 미사일 발사 날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날. 3850km짜리 미사일 발사날, 인공위성 쏘는 날. 소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자기 임기 중에 건설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야심찬 얘기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려면 북핵문제를 저렇게 놔두고 어떻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시키겠습니까. 미국 핵무기도 폐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해야하는데 그걸 임기 후반에 하겠어요? 더구나 내년 5월이면 2010년 5월이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북한도 탈퇴해있고 이란도 이렇게 돼 있고 하는 소위, 핵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인 NPT를 재정비하는 회의를 내년 5월에 하게 돼 있어요. NPT 증거 회의를, 검토 회의를, 지금까지 NPT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하는 회의를 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가닥도 잡아 놓지 않고 그 얘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캠벨 들어오면 바로 그 사람이 국방부에서 소위 핵 비확산 증거로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북한과의 인게이지먼트를 시작할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은 소위 북한 같은 나라는 스트라티직 메니지먼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스트라티직 메니지먼트란 것은 압박과 무시 그거 아니에요. 맘대로 해라. 부시 초기에 했던 얘인데. 그래서 소위 그 기본적인 대

1년 반 가까이 하다보니까 나중엔 농담도 할 정도로, 농담도 잘 받아요. 그래서 민변이라고 하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있지만 느낌이라고나 할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하면 수도꼭지가 잠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북정착의 시각이 북한과 같은 나라는 스트라티지 메시지먼트가 필요하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자꾸 할 일을 해야 한다. 반대한다고 할 때는 채찍과 당근을 두가지를 들게 했지만 채찍보다도 당근을 써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습성입니다. 채찍 먼저 휘두르면 북한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도 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근을 쓰는 식으로 한다면 결국 미북간의 접촉이 활성화되고 미북대화가 일상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텐데, 금년 가을부터 그렇게 되어 합니다. 그래야 내년 5월 이전에 뭔가 북핵문제와 관련된 로드맵이라도 내놓고 내년 NPT체제회의에 상정해서 국제적인 인준도 받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지도 끌어내고.

이렇게 가게 돼 있던 말이야. 그러니까 남쪽 정부가 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핸들을 꺾어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또는 내가 볼 때 참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진 아무도 모르죠.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불쑥 얘기를 다루니까.... (웃음) 갑자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느냐 식으로 확 돌아서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일 혼자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못 알아들었다 식으로 뭐뭐뭐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돌발영상입니다 그냥

**심재환** 박수. (박수) 장관님이 오늘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한시간 정도 예측하고 말씀해주시겠다고 했다가 지금 거의 90분정도를 열강해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임도원 장관님 오셔서 저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딱 다르시네요 반대시네요. 임도원 장관님은 강의안을 만들어와서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정장관님은 사랑방 좌담 스타일로 구수하게 당시의 경험들 풀어가시면서 한반도 정세, 어떻게 읽고 어떻게 헤쳐가야 할 것이냐 또 전망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세현** 오늘 저는 민변에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매우 전 프라우드하게 왔어요 솔직하게. 그야말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뭐 친구들도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대한변협쪽 변호사들은 양복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하는데 여기는 뭐 전부 남방 뭐 (웃음) 5만원짜리 무슨 ... 10만원짜리도 비싸죠.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뭐 노무현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고 또 강금실 장관도 바로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좀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가까이 하다보니까 나중엔 농담도 할 정도로, 농담도 잘 받아

요. 그래서 민변이라고 하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있지만 느낌이라고나 할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하면 수도꼭지가 잠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웃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북미관계에 대해 밝게 전망하셨는데 저는 오바마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일각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분석에선 미국무부가 비확산관리쪽으로, 비핵을 위한 핵 협상이 아니라 즉 핵을 인정하고 비확산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세현** 글썽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비확산만 보장받으면 북핵문제를 매듭지으려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지요. 저는 그거는 미국의 군사복합체, 또는 국방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학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핵이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시키지 않을 정도이면서도 미국이 소위 매니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 두고두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차원에서 대미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좋은 그림입니다.

무슨 얘기나면 북한의 완전 핵 제로화를 끌고 가려면 보상이 굉장히 클테니까, 미국이 그 보상을 할 준비도 안 돼있고 일본도 안 내려고 그러고, 그럼 적정선에서 눌러놓고 남한이 북핵 때문에 전전공공하면서 한미동맹강화해달라고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핵우산보다 더 강력한 소위 그 익스트림리 디터런스라는 해법, 확장억지력 개념인데, 한미동맹강화라고 하면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하면 더 비싼 무기를 더 많이 사주는 것이 동맹강화입니다. 작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 미 무기 판매 수준을 일본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그래서 요구하면 바로 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기 구매금액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얘기를, 돈 얘기는 안하니까 선글라스 할아버지들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이 격상되면 격상될수록 돈은 더 나가요. 우선 첫째,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나가요. 지금 우리는 42%가 안돼요. 이걸 50%까지 올리라는 거예요. 일본이 70% 내지 75% 내는 데 그만큼 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나 군산복합체 입장에선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가고

비관과 낙관이 있는데, 낙관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YS시절에 YS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려고 일정한 지분이 있다 이랬는데, YS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혜택도 별로 안 준 것 같고요, 조선일보가 이후에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했습니다.

신문은 아무리 발행부수가 많아도 절대로 수백만 명이 볼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들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은 장기적으로 물적기반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독립언론은 더 힘들어집니다.

싶은 분석이나 전망을 한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소위 이데올로기적 계산이 깔린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보면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입장이란 뭐냐. 군산복합체보다는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해놨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북한의 몇 개 핵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 있겠어요. 그건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한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얘기를 포린 폴리시에 작년 일월호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런 걸 근거로 기정사실화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 거 된다는 해괴한 주장도 나오고 있고, 우리의 핵을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안할 거고 북한의 핵을 미국이 인정하냐 안하냐 보다도 중국이 인정 안한다는 것이 더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미국이 인정할 때 그것이 일본의 핵 무장을 정당화시켜준다고 중국은 볼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특히 우경화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여론을 짚어누르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줄 힘은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럼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그걸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중국은 핵무기 면에서 완전 열세에 처지게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핵우위를 완전히 빼앗겨 버리면 동아시아에서 그만큼 정치군사적 외교적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커트캠벨이 바로 비확산 전문가입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국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놓으면 북한의 꼭 소위 그 기술적인 문제로 선행동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다보면 북한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리이러한 걸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동을 요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으면 뒤통수를 칠 거라고 의심을 해서 계속 원점으로 돌아온거죠. 북한은 하나의 정권이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변화가 없는데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또 민주당 정권임에도 의회를 공화당에 뺏기면 클린턴 정권 초기에 했던 얘기를 이행을 못하고 정권 바뀌면 외교한다고 육개월동안 허송세월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고 클린턴도 중간에 실무자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소위 강성보고를 받았기에 센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 서울와서 했던 얘기는 9.19공동체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분명히 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있다면 미국은 수교도 해

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해주고 경제지원도 해준다. 9.19공동성명체제의 약속이 그겁니다. 북한의 핵동결, 핵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세 가지예요. 정치외교적으로 수교, 미국수교뿐 아니라 일본수교도.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경제지원. 그 답에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해서 북한이 맘 놓고 미국으로부터 맞아죽을 염려없이 맘대로 좌우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간 미국만 동북아시아 국제정책이 미국만에 액터가 아니고 중국도 중요한 액터가 돼있고 한국이 아무리 미국의 네오콘하고 손을 잡아도 뜻대로 안 된다, 근데 뒤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 그 핵무장이 중국에 오히려 더 이롭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받아들여질진 의문이지만...



**정세현** 글썬요. 중국의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결국 후진파 오가 결정하는거죠. 물론 지금 후진타오가 아니라 전임자지만, 장쩌민이 2004년도에 DJ를 만났을 때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니까 중국이 핵심 아니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중국입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거두절미하고 절대로 용납안한데. 그건 득실을 따지는 것 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절대로 허용 안된다는 거야. 후진타오가 그렇게 같지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시진핑이 그때가서 입장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덩샤오핑시대의 전략이 지금과 다른 것처럼.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비관과 낙관이 있는데, 낙관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YS시절에 YS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려고 일정한 지분이 있다 이랬는데, YS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혜택도 별로 안 준 것 같고요, 조선일보가 이후에 대통령 만들기를 자제했습니다.

신문은 아무리 발행부수가 많아도 절대로 수백만 명이 볼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들이 방송까지 장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은 장기적으로 물적기반을  
가지게 되고 지금도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독립언론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핵보유국이나 안보용이나 협상용이냐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뤄서 그걸 협상용으로 쓸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협상용으로 써서 지들이 얻는  
득이 크다는 비전 쪽으로 해서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미국이 작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쯤  
되는 나라가 어떻게 북한의 김정일 자비에 매달리는 정책을 해야한다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본심 얘기  
를 자꾸 하는데 나는 그게 미국답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김정일의 본심이 궁금하다고 말  
하길래 내가 말했어요. 당신네가 맘먹기에 따라서 이라크 치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란데  
어떻게 김정일의 결정에 따라 당신들이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나. 100억불도 안 된다. 얼마든지 아주 프로 아  
메리칸(pro-american)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김정일의 본심을 따지다가 결국 핵공격을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  
책을 찾아야 한다. 그럼 대책을 누가 제공하느냐. 리드해가자. 인정하자고 하면 중국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  
면 인정할 수도 없고 보상이 너무 커서 협상할 수도 없고 그럼 쳐야한다는 얘기가. 군사작전 밖에 없어요. 그  
런데 지금 동북아 상황이 군사작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라크는 맞아죽을 수도 있는 불쌍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은 힘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배후국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북한에 이념적으로 동질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군사적으  
로 미국이 조치할 때 그 때 불뚱이 만주로 튀는 것을 가만히 놓아 두겠느냐. 그때 북한이 미국에 정치군사적  
으로 편입되는 걸 중국이 놔두겠느냐. 6.25때와는 다릅니다. 6.25때는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는 무시했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무시할 수 있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GDP가 그렇고 중국이란  
나라가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란 것이 미국이 왔다갔다하면서 협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  
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미  
국은 위안화 절상을 중국이 해주기를 바라는 정도 자기네 경쟁적 해결을 위해서 중국 눈치를 봐야될 처지에  
어떻게 중국의 비위를 거꾸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럼 협상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  
기가 대고 김정일의 본심이 중요하다느니 재수없이 중국 때문에 핵보유국 인정할 수 밖에 없느냐느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만 자꾸 늘어놓으면서 문제 해결 길을 놔두고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8.15쯤에 돌발영상을 기대하고 하반기엔 바뀔 거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기대인지,  
아니면 정보가 많으시니까 정보에 의한 것이신지요.

**정세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놓은 거, 써놓은 거 읽으면 좋은데 자꾸 써준대로 읽지 않고 돌발영상식  
으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없었던 일이 되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내부에. 이제 그런 쪽의 얘기 때문에 현실로서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3년 반 상  
황이 더 나빠지고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순 없지는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  
려야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8.15 전에  
는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지 정말 이거 북핵문제의 해결 수순은 뻔한데 오바마도 바게닝으로 넘어간다고 볼  
때 우리도 핸들을 틀어야 하지 않겠냐. 내부에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실무들은 할 겁니다. 정치  
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이 한 말을 이정표로 삼고 가려고 하겠지만 비서실이 잘 역할을 하고 국무  
위원들이 좀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잘 까먹는 거 같아요 자기가 한 말을. 실제로 작년  
7월 11일날 국회연설은 박왕자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했던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좀 있었습시다. 밖에서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미 그리고 부시정부가 미국이 말년에 성과를 내려고 서두  
르는 기미가 있는데 미국이 판을 다 짜 놓은 뒤에 이거 당신이 뒤늦게 허겁지겁 ◎아기는 모양새를 취하면 국  
내 여론도 안좋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7월초까지는 뭔가 조금 해보려는 멘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건의  
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 그날 새벽에 이런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  
통령이 이랬다고 욕먹지 않았습니까 보십쇼. 뭐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그쪽 참모쪽에서는 뭘 해보려고 하면  
북한이 사고치고 사고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오죽하면 돌발영상이라  
고 하겠어요.

**심재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 『유러피언 드림』

제레미 리프킨, 이원기역. 민음사(2005)

정리\_좌세준 회원



일시 : 2009. 7. 21.(화) 19:00

참석자 : 김선수, 김태선, 김하연, 임신원, 정소홍, 좌세준, 한택근, 황희석

**좌세준** 7월 마지막 주 공부모임을 위해 선정한 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 들고 계셨다는 2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한 권은 작년 말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이고, 나머지 한 권은 오늘 저희들이 고른 『유러피언 드림』입니다. 노 대통령께서 주변에 많이 권유했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발제는 지난주부터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임신원 변호사가 해주시겠습니다.

### 퇴색하는 ‘아메리칸 드림’, 미래에 대한 희망 ‘유러피언 드림’

**임신원** 예. 지난주부터 공부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미래학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미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차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첫 장 “구세계에서 얻는 새로운 교훈” 부분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퇴색”, “새로운 기회의 땅”, “소리 없는 경제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유럽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생산성, 빈곤, 신앙심 등에 대해서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자리나 실업률, 노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같은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현대의 형성”에서는 경제사를 오래 만에 보는 것 같던데요. “공간, 시간, 그리고 모더니티”, “개

현대 유럽의 경우는 자본주의로의 이행 이후의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 적 제도와 발상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주의의 발달”, “사유재산 개념의 발달”, “자본주의 시장과 민족국가 확립”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자본 세력과 새로운 정치권력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과 민족국가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프킨이 이 부분을 상세히 서술한 이유는 유럽의 봉건주의 말기의 상황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 유럽의 경우는 자본주의로의 이행 이후의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 적 제도와 발상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는 유럽에서의 그와 같은 대응이 효과적인 것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 유럽과는 달리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미국에서는 오히려 유럽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집단책임을 강조하는 유러피언 드림

세 번째 장 “다가오는 글로벌 시대”에서는 EU(유럽연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계화된 경제의 네트워크 상거래”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사회에서의 통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대, 저작물에 대한 공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치도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발명되면서 봉건주의적 사고가 허물어졌던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고 있는 네트워크 상의 정보의 공유에 관해서 생각해본다면, 공유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저작물은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원본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다운받고 감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형태의 저작물 외의 것들이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작권법 개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같은 것은 여전히 정보의 사적 소유, 배타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저자는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 '개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집단책임과 세계화 의식을 강조하는 유러피언 드림 쪽에 끌리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표현하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시민사회의 힘'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네트워크 상거래의 확산현상을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던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정도로 비증을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합중국”, “중심 없는 정부” 부분에서는 현재 유럽의 변화 모습들, EU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 현재의 EU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 EU의 형성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연방주의자’와 ‘연맹주의자’의 대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구애” 부분에서는 우리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 공동체 의식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민탈레마”, “다양성속의 조화”에서는 유럽 공동체 내의 소수민족 문제, 이민의 증가가 앞으로의 EU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딜레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유럽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면 EU의 존속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 “제2의 계몽주의”, “유러피언 드림의 보편화”, 이 3개의 장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적절한 분석인지는 의문입니다만, EU가 군대를 갖는 것은 유럽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종합해보면, 저자는 미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 '개인 책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메리칸 드림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집단책임과 세계화 의식을 강조하는 유러피언 드림 쪽에 끌리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표현하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이고 언급하고 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발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디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힘에 대한 고민

**좌세준** 예, 감사합니다. 다들 읽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녹아들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인의 입장에서 유럽을 바라본 책인데요. 유럽은 계몽주의와 종교개혁이 근대를 이루는데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이러한 근대의 요소와 사고들이 극복이 되어서 2차대전 이후에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반면, 미국에서는 그러지 못한 면을 저

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사람들은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인데 계몽주의나 종교개혁의 사고방식을 아직까지도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리프킨의 분석입니다. 저자는 아메리칸 드림의 긍정적인 면이 퇴색하고, EU의 탄생, 네트워크 상거래의 확산 등을 보면서 유러피언 드림이 앞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이지요. 노 대통령은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시민사회의 힘'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선수** 우리가 공부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유럽과 비교되는 미국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택근** 유럽에서는 빈부격차 문제 같은 것을 사회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흑인이 가난한 것을 보고 백인들은 흑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흑인들처럼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거나, “가난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의 문제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개인의 힘으로 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고방식 아닌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 문제라는 것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드림은 없는가

**김선수** 유러피언 드림이 있다면, 아시안 드림은 없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저자가 유러피언 드림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속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 개인보다는 소속감, 관계, 공감, 자연에 대한 관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으로 묶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나. ‘아시아’라고 할 때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아시아의 경우는 ‘극단적 집단주의’의 면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이고, 유럽이 그 절충적 입장이라는 것인데 정도의 차이 문제이고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좌세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언제쯤 아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서 읽었는데요. 후반부 469, 470페이지쯤에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이 미국인의 입장에서 유럽을 바라보면서 유럽인들의 발상법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80년대 서구 학자들이 거론했던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서구학자들이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보면서 “아시아의 유교적 전통이나 개인보다는 집단을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 이런 식의 얘길 하다가 IMF 이후에는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접근을 해서 “개인적인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탄을 가져왔다”라는 식의 설명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해요. 저자가 스스로 “서양인으로서의 편견일지 모르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아시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김선수**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딱 한 사람 책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리처드 니스벳인가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좌세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서 ‘네트워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들 사고에도 그런 게 있죠. 최근에 생태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드라마’이라는 것은 이 세계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보면 저자가 말하는 ‘네트워크’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은 아시아인들에게 오히려 더 익숙한 사고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김선수** 네트워크의 의미가 곧 ‘망(網)’이잖아요. 신영복 선생님도 지난 번 월례회 때 관계론적 세계관 이야기를 하시던데, 비슷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황희석**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으로 묶어 낼 수 있는 것이 있나. ‘아시아’라고 할 때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는가하

사실상 자기 세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결정적인 한계이고,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화폐, 관세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사실은 자국 중심으로 세를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세력균형 속에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는 생각이 듭니다.

**좌세준** 이 책의 후반부에서도 지금 황변호사님 지적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인 공동의 이익은 있지만 문제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정치통합까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의 유대감이 충분하냐”는 지적이지요.

**정소흥** 저자가 동북아만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동북아 공동체라는 발상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사실 일본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패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황희석** 그렇죠. 유럽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세력의 국가들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아시아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김선수** 이 책의 저자는 중국도 소련이 여러 나라로 분할된 것처럼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위구르 사태를 보면서도 과연 그런 분할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지요.

**황희석** 유럽의 역사와 한, 중, 일 이 세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대동아공영’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상 자기 세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결정적인 한계이고,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화폐, 관세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사실은 자국 중심으로 세를 확장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세력균형 속에서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면을 보면 동북아공동체라는 논의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좌세준** 정치적 수준의 공동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북아 경제 블록화’의 가능성은 어떨까요.

**김선수**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는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GDP 개념의 허구성은 우리 공부모임에서 읽었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 같은 경제학자가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의 조건마저 불평등한 사회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회죠. 불안한 사회고, 그런 면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정말 위험 수준에 온 것 아닌가 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성장 논리의 재검토

**황희석** 주제를 좀 바꾸어서, 이 책을 보면, 경제성장의 지수로써 GDP, GNP 개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환경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나 군수산업에서의 생산마저도 GDP에 포함되어 성장을 측정하는 계수로 사용된다 이런 말이지요. 이러한 허구적인 계수 개념을 사실은 맹렬하게 공격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허상이다. 완전히 숫자놀음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신문과 방송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삶의 지표를 삼는단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허상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선수** GDP 개념의 허구성은 우리 공부모임에서 읽었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 같은 경제학자가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질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좌세준** 저자가 이 책에서 유러피언 드림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도 통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책에서는 GDP를 가리켜 '더하기는 하지만 빼기는 하지 못하는 계산기'라고 하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삶의 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서가 해방 이후에 미국적인 것에 많이 물들긴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들 의식 속에는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는 사고와 공동체 의식의 뿌리를 발견해 낼 수 있지 않나요.

**황희석**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런 의식이 정서적으로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인 토대는 IMF를 계기로 완전히 깨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허울 좋게 이데올로기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사회적 연대의식 같은 것은 사실상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지요. 연대의식 같은 것은 농촌에서마저도 다 깨진 것 아닌가요.

## 자유와 평등의 가치, 기회균등의 문제

**좌세준** 이건 조금 다른 접근법입니다만,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볼 때 과학적인 분석

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자유'보다는 '평등'의 가치에 조금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사고방식보다는 그래도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 한 표 던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진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힘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희석** '평등'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도 '기회의 균등', '결과의 균등' 두 개를 얘기합니다. starting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라면 finish 라인을 맞추는 것이 '결과의 균등'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형식적인 기회의 균등이나 결과의 균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의 균등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누가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정하는데 "가위 바위 보를 하게 해서 정하는 게 가장 평등한 것이다"라는 발상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평등의 개념이라면 이건 너무 형식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좌세준** 우리 사회에서 평등해야 할 것 중에 딱 하나를 들자면 지금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했지만, 교육에서의 실질적 평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조건마저 불평등한 사회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회죠. 불안한 사회고, 그런 면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불평등 문제는 정말 위험 수준에 온 것 아닌가 합니다.

**정소홍** 저는 이 책에서 미국의 인종문제는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유럽에서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왜 비중 있게 언급하지 않았는지. 최근 프랑스에서 이민자들의 폭동이 있었죠. 근본적으로 유럽 사회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민자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자 문제는 앞으로 중대한 사회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희석**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이주자들이 하나의 지역집단으로 정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슬람권 노동자들이나 이주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런 게 이슈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이슬람 이주자들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요.

우리가 당연히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좋은 직장,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교육 받는 것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본다는 거지요.

**김선수** 저는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직접적인 나쁜 행위'와 '간접적인 나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기가스 문제를 일으키는 SUV 차량 문제나, 육류 생산을 위해 사료용 곡물 재배 때문에 제3세계의 기아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SUV 차량을 운전하고 육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나쁜 행동'에 동참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좌세준** 그런 의미에서 최근 채식주의 선언을 한 김변호사님, 황변호사님은 간접적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실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웃음)

## 차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태선**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미국에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잠시가 있으면서 놀랐던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당연히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좋은 직장,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교육 받는 것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본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인종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문제들을 '차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처음에는 인종 차별의 문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 학력에 대한 차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차별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에이즈문제도 차별의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질병을 가졌지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다양성, 다문화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놓고 이야기하거나 제도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요.

대학생들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복지의 문제나 소수자 문제는 국가의 역할이나 제도의 문제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하연**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직접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애인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을 접한 적도 없는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 했더니 대학 진학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그 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보면서 '참 평등하지 못한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담당했는데 영어사전 하나가 책장 두 칸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이에요. 비장애인들과 비교해도 머리로 뛰어내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의 조건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놀랐던 것은 대학생들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복지의 문제나 소수자 문제는 국가의 역할이나 제도의 문제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세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사례를 얘기 해주셨는데요. 소수자문제나 기회의 균등마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로스쿨과 제주 이야기

글 박선아 회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첫째만은

때의 나의 이상과는 먼 지점에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여러 상황적 제약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방광역시의 몇 안 되는 개업 여자변호사로서의 편안한 수임 구조와 크게 부딪칠 일 없는 평온한 일상의 알은 단맛에 이미 길들여진 내가 변화를 막고 있었다. 민변 회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 아쉬움을 넘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사무실 운영, 출산, 육아 등 나의 일상을 둘러싼 것들에 파묻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것 같다.

개업 변호사 5년 하면서 지치지 않은 변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그 5년 동안 꼬박 일을 하면서 줄줄이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았고, 그 아이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면서 나도 아이들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을 만큼 서로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되었고, 아이들과 엄마인 나 사이에 있었던 가슴의 구멍이 내 변호사 생활의 피로를 더했다. 좀 쉬면서 공부를 할까 생각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도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자기 직업을 찾아 그럴 여유가 있었다. 그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모교 은사님께서 대학에 있으면서 학업을 계속하면 어떻겠냐며 추천을 해주셨고, 단 며칠이었지만 깊은 고민 끝에 학교로 오게 되었다. 추천 또는 초빙되어 가는 것이니 그냥 되는 줄 순진하게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국립대학교 전임 교원 임용인 만큼 까다로운 절차와 나름의 경쟁이 있었는데 운이 따라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시골 여자아이의 아무진 꿈을 간직한 이후로 20년도 넘게 나의 희망 직업이었던 변호사를 갑자기 그만 두고, 2008년 8월 1일부터 내 삶의 두 번째 직업 '선생'이 되었다.

### 로스쿨 교수의 일상

우선 대학 생활은 학기와 방학을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한다. 1년 52주에서 학기가 30주, 방학이 22주다. 학기 중에는 주당 6시간의 강의를 이틀 동안 하고, 나

머지는 강의준비, 논문 작성 등 개인 연구를 한다. 로스쿨은 교수 1인당 주당 강의시수가 적어 강의시간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신규 교수 그룹에 속하는 나로서는 강의 준비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경력 많은 교수들의 세 배 짝은 되는 것 같다 (지난 5,6월호에 실린 전형배 회원님의 일상이 나와 너무나 같아 "2009년 5,6월호 전형배 회원 글 참조"라고 주석을 달고 싶을 정도다).

로스쿨 커리큘럼에는 그동안 법과대학에는 없었던 법률실무 과목이 여럿 있는데 대개 변호사 경력 교수들이 실무과목을 나누어 담당한다. 그 외에 자신의 전공과목을 갖고 있는데, 나는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을 맡고 있다. 강의, 교수회의, 지도학생들과의 멘토링 시간 이외에는 거의 연구실에 혼자 있다. 변호사할 때와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것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이다.

학기가 시작되고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면서 한 달 반가량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다. 학점이 사법연수원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로스쿨의 경우 시험 주간이 학생들에게 도전과 좌절의 기간이라면, 교수에게는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오거나 멀리 있는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 때문에 미처 마감하지 못했던 논문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 같은 행복한 기간이다.

그렇게 일주일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 한 학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고 다시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는 날들을 한 달 반가량 하다 보면 종강이 다가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여름 방학기간인데, 고백하자면 나는 지난 5월부터 여름 방학 계획세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어찌나 마음이 설레었던지 초등학교생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오롯이 나만의 계획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3개월에 가까운 시간들을 허락받은 것이 언제였던가.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기말 성적 입력을 일찍 마감하고 아이들과 짧게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고생할 각오로 떠났고 내가 여행에서 얻고 싶었던 것과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

는 것들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아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다. 나 혼자 갔더라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엄마의 보디การ์ด 역할까지 해 주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매일 연구실에 나가서 다음 학기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않을 뿐 공부의 양은 더 많아졌고 출·퇴근시간도 똑같다.

아직 교수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이르지만, 아마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연구자의 길이 특히나 고독하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협업이 거의 없는 법학 전공의 경우에는 혼자서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하고, 쓰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연구 활동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의 일은 한창 바쁘게 일하다가도 도중에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연구는 휴대전화는 물론 연구실 전화까지 차단해 놓고 정좌해야만 눈에 보이는 진척이 있는 일인 것 같다. 어쩌면 아직 공부가 덜 된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 제주, 섬 생활 1년

내가 교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제주'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에 더욱 큰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렇다. 나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 살고 있다. 제주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온 가족을 이끌고 제주로 이사를 왔고, 지금은 캠퍼스 안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 아파트에 산다.

삼나무와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아파트는 자일리톨 광고에서 본 것 같은 북유럽의 핀란드 어느 마을 같은 곳이다. 간혹 아파트 마당으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어린 노루가 뛰어들기도 한다. 테라스 창밖으로 멀리 고개를 들면 한라산이 보이는데, 지난 5월에도 한라산 정상에는 눈이 내려 따스한 봄날 내 거실에서 눈덮인 한라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실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면서 잠이 들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창 밖에서는 개구리소리, 풀벌레소리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글\_정병욱 회원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원 여러분,
신입회원이자 연수원 37기인 정병욱입니다.
아침부터 서울은 그럭저럭 흐리기만 하였는데,
영남지방에서는 물난리가 났었다고 하는군요.
제발 피해가 적기를 기원합니다.

그 변호사님의 전화 한 통

지난 '민주변론' 회원이야기 란의 전형배 교수님께서
'청명함과 당돌함이 현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언제 들어
도 반가운 목소리를 가지신 김진 변호사님의 연락이야
말로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스타카토요, 베토벤 피아
노 소나타의 포르테' 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께서 제게도
원고를 기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영광스럽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
김진 변호사님은 신입회원들의 근황을 들어보고 싶
다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민변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소회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친절하게 메일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참 부족한 저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에 글을
쓸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리고 잃어버린 10년

그동안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글로 풀어나가려
니 부끄러워 김진 변호사님께 이거 못하겠다고 말씀드
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그동안 살아온 생활을 요
약하는 게 훨씬 더 쉬울 듯 합니다만, 그래도 대략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떠올려본다면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
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밑에서 참 평범하
게 강릉의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의 한 대학교에 유학(?)을 와서 고시에 붙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정도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글짓
기 대회나 웅변 대회에서 간혹 상을 타기도 했는데 지
금은 글재주나 말재주나 영 쟁쟁인 걸 보면 역시 변호
사가 제 적성은 아니었나 봅니다. ^^;;;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라고는 비평준화고등학교를
나와서인지 '공부' 만을 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
네요. 다만, 일요일이면 성당에 나가되 기도보다는 예쁘장
하게 생긴 이성친구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아미?
그래도 '공부' 만을 하던 그 때 만난 친구들을 지금까
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건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
이고 소중한 인연이랍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가 1997년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 제가 다
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도 집회·시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시절 학교 안에서 터지는
최루탄 냄새를 맡은 적도 있고, 소위 백골단에게 학교
앞에서 가방 수색도 당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때 전 그
들이 왜 집회·시위를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최
루탄 냄새를 맡으며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내기 시절은 지나가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IMF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더니 대동

으려고 해도 멋진 자세조차 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름답지 않은가. 제주에 온 이후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 자연과 뒹굴며, 자연과 마주하며
살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제주는 아름다웠고 너그러
웠다. 나는 간혹 이런 말을 혼자 해 본다. "제주라는 삶
의 아이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살면서
힘겨웠던 기억 중에서 세 가지 정도는 더욱 씩씩하게
견딜 수 있었을 텐데"라고.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대학교수가 되리라고는 꿈
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변호사를 하면서 사건
과 함께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늘 어떤 선생이 될 것인가를 고
민한다. 아직 정답은 없고, "그건 선생이 아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내가 되고 싶은 선생상을 만들어 나
간다.

학생들을 일대일로든 그룹으로든 자주 만나려고 노
력한다. 제주도의 특성상 교수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
벼운 오름 등반이나 올레 걷기 같은 행사도 자주 있다.
주로 그런 소소한 행사를 통해서 동료교수들이나 학생
들과 가까워지는데 여유가 되는 대로 참여한다. 그 외에
는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한다.

변호사 5년 하고 스스로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반복
하지 않기 위해 아직 교수사회의 때가 묻지 않았을 때
나는 단련하려 하는 것이다. 공부나 이제 겨우 워밍업을
끝낸 터라 교수사회에서 내세울만한 연구경력도 없다.
그렇지만 조급하지는 않다. 다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이외의 것은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오
늘 아침도 집을 나서서 아이들을 유치원 셔틀버스에 태
워 보낸 후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연구실로 가서 조용
히 책을 볼 뿐이다. ☀

가 구성지게 들려온다.
지난 봄에는 캠퍼스 안에 있는 오름에서 고사리를 꺾
어 말려두었는데, 다가올 추석 선물은 내가 깍은 제주산
고사리로 할 요량이다. 또 요즘에는 채소 농사에 재미를
붙여 아파트 공터에서 상추, 열무, 토마토, 가지 등 갖가
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금요일 저녁 8시만 되면 남편
이 광주에서 제주로 퇴근을 한다. 휴일에는 날씨가 좋으
면 밤낚시를 가기도 하고, 날씨가 더워진 이후부터는 낮
에는 서귀포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한 후 해거름에는 제
주의 유일한 갯벌인 성산일출봉 인근 바다로 가서 맛조
개와 바지락을 캔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행복한 제주
의 선물은 바로 맑은 물과 공기이다. 맛있는 삼다수를
사지 않고도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샤워까지 한다. 비가
갠 맑고 청명한 하늘에 동실 떠있는 황홀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무지개도 모두 제주의 맑은 공기와 자연이 있
기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아무 곳도 갈 수 없다. 간혹 살다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어딘가 가
고 싶은 곳이 생겼을 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던 것
처럼 아무렇지 않게 가고 싶을 때, 제주엔 그게 안 된
다. 자동차를 몰고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무작정
가고 싶어도, 일단 신분증을 내고 비행기를 타는 '수
속'이라는 것을 밟아야 한다. 그러니 지레 겁먹고 포기
하고 만다.
제주이야기를 하면서 바람과 돌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간혹 바람이 세계 부는 날이면 날려가서 돌에 머
리를 부딪쳐 기절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기본 코
스인 성판악으로 한라산을 완주하게 되면 제주의 바람
과 돌을 제대로 실감하게 된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긴 등산길에 빼곡히 들어찬 돌,
내 평생 본 돌보다 성판악 코스 하루 완주하면서 본 돌
이 더 많다고 농반, 불평 반을 하면서 힘겹게 산을 올라
백록담 앞에 서면 왜 올라왔냐고 야박하게 구는 생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바람을 만나 사진 한 장 찍

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 만 19세라 투표권이 없었던 저는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도 역시 사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학내 재단 비리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가 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2001년 군대에 갔는데, 그곳에서 월드컵을 보고(ㅠㅠ) 제 첫 투표권을 행사하고 2003년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육군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2년 2월에서 2년으로 줄이시더군요(ㅠㅠ).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에 전념하여 2004년 1차에 붙었을 때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온 사회가 요동을 쳤었지만, 전 동차준비를 하며 고시 공부를 하기 바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을 때에도 전 다음 해에 치를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와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서울이 관습법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도 전 이 결정이 고시 2차 문제에 등장할 지 걱정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5년 합격을 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처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곳은 인터넷 검색을 하여 알게 되었고, 단지 '사랑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너무나 유명한 시민사회단체더군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잠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06년부터 또 다시 저는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1997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2008년 2월)까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원봉사를 한 그 기간을 제외하면 전 무료하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국민"이요 "시민"이자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욕할 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 제 청춘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억울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잃어버린 10년을 제게 되돌려주실 분들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셨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 여러분들에게 감사(?) 하면서 열심히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뭐가 맞지?

사실 전 지금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지 헷갈린답니다. 그만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민변"에 가입하게 된 건 역시 작년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이명박 탄핵집회) 문화제 덕분(?)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회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함께 잘살기"를 좌우명 내지 인생의 가치관으로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던지라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기어이 대통령으로 당선 이 되고 취임을 하더니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장악 하더군요. 정말 국민들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 겁니까? 참담한 선거결과와 대한민국에 실망을 하고 있으려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고(?)를 내기 시작하시더군요(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사고가 아니라 정책의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 때 읽었던 광우병 관련 기사의 댓글이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명박을 뽑지 않았는데, 결국 내 아이와 내 가족이 당해야 하니 연좌제도 이렇게 더러운 연좌제가 없다."(아마 일본 공무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욕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었던 듯 합니다)

분개할 수밖에 없었고, 거리로 뒤흔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2008년 5월 2일 사실 그 날 집회는 이명박 탄핵 집회였죠. 그 자리에 그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많았었죠. ^^;; 양복 입은 제가 다 창피했으

니까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가해서 "구호(다들 상상이 가시죠? ㅋㅋ)"를 외치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 그렇게 시원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 여러 사람과 함께라니...(이 기분도 아마 다들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렇게 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에 여전히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집회가 여러 번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물론 저도 주말이면 짬을 내어 나갔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하고, 약 10만 여 명의 국민들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 위한 소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제 아내가 모금을 위해 계좌이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기간이 끝났지 뭐니까? ^^;; 집회만 참여했지 기부하는 걸 깜박했습니다(깜박할 게 따로 있지!). 그 때 아내를 비롯한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위헌소송을 준비한 민변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변 화비라도 열심히 내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고시 위한 소송에 작은 마음을 보낸 그분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민변 활동이 벌써 1년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49재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비가오더니(사실 이 글은 근 삼일에 걸쳐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문체와 뒷부분의 문체가 조금 다른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뜰 정도로 화창합니다.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두 번이나 사과를 한 것 같았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49재이고,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용산의 고인들과, 촛불문화제로 기소된 시민들이고, 신영철 대법관이고, 부자감세 등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와 정책이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이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고, 일부(?) 국민들의 시국선언이고, 해임·파면

당한 전교조 선생님들이고, 비정규직법 유예기간 연장 에 혈안이 된 그들이고,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친북세력을 지목하는 그들이고, 남북관계의 악화이고, 사교육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한 PD의 이메일을 공개하는 검찰이고, 한예종을 좌파라고 하는 그들이고, 1인 시위를 하는 학부모에게 '세뇌되었다'고 하는 그들이고,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을 낭비하려는 그들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을 부수고 버젓이 활개치는 그들이고, 검역조차 제대로 안 된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고시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 때 함께 스터디를 같이한 형님 한 분이 "이제 참 살기 좋은 세상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때 참 살기 좋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마음껏 깔(?) 수 있었고 대통령 욕도 함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도 할 수 있었네요.

전 제가 이토록 엄혹하고 잔인한 사회에서 살아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 어렵게나마 기억하는, 서울에 올라오면 거리마다 모여 있었던 그 "데모꾼"들 중에 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민변 활동도 안하고(?) 늘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아갈 줄은 몰랐습니다(물론 이건 거의 농담 반이고, 사실 제 아내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중이라 앞으로 약 3년간은 아기 계획이 없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돌아가셔서 제가 며칠 밤낮을 울어야 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민변 정기 총회가 연기되고 뒤풀이 자리에서 '민중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저 예전처럼 사회에 관심 없이 정치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좋을 지도 모르고, 어떤 정부든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위에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분들 중에는 저를 '반정부세력'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전 다같이 잘살고 다같이 웃을 수 있는 나라

## 민변 회원들의 새 책

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나라를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만 잘 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 때문에 이 현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변협신문(2009년 7월 6일 자 제279호)을 보니 올해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인 해고, 3·1 운동 90주년인 해라고 하더군요(정말 까맣게 모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ㅠ). 또 진중권 교수님과 전원책 변호사님의 대화 중 진중권 교수는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까지 버릴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그러나 철저히 현실적으로 되자’는 68혁명의 구호가 생각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민변에 가입한 건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순국선열들과 일제와 독재에 맞서 싸우신 열사님들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다만, 민변에 가입하고 보니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던 분들만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눅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회에선 콘소리치는데 민변만 오면 개미목소리가 됩니다(개미목소리라도 내면 다행입니다. 꿀 먹은 벙어리일 때가 더 많죠).

예수님의 웃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분들의 심정을 이제 좀 이해하겠습니다. ㅎㅎ;; 제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손까지 내밀어주시고 말까지 걸어주시니 이거 어찌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글까지 쓰라고 하시니... ㅠ(이건 기쁨의 눈물입니다). 정말 이런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돋워주시는 민변 모든 회원님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제 글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형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 7. 10.  
정병욱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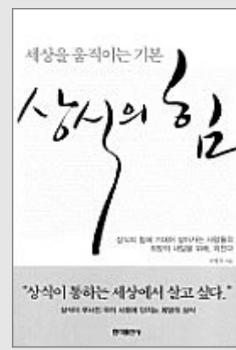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최강욱 회원,  
도서출판 갤리온,  
2009. 6. 12. 출간,  
A5, 232쪽

사법위원장 최강욱 회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해석' 새롭게 묶어 책을 냈다. 그동안 뉴스해석에서 보여준 최강욱 회원의 탁견으로 법률가의 눈의 통해 현안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제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광고주 불매 운동,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주민소환제), 제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용산참사, 이랜드 노조 파업, 화물 연대 파업,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증인 보호 프로그램, 군대와 인권, 다문화 가정, 호주제 폐지), 제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삼성특검, 대통령 특별사면, 전관예우,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제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전·의경 제도, 군경 합동 검문, 존엄사, 사형제, 간통죄)로 구성된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의 정치/사회 분야의 추천도서로 꼽힐 정도로, 지금 같은 시대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 하는 법적 이슈들을 모두 한 번씩 아우르고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 상식의 힘**

차병직 회원,  
홍익출판사,  
2009. 6. 15. 출간,  
A5, 360

민변의 대표적인 논객 중 한 사람, 차병직 회원이 특유의 '냉소적 낙천주의'로 엮어 또 한편의 책을 냈다. 현실이 갑갑한 것은 상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식'이라는 것은 왜곡되기도 쉽다. 저자는 운전, 식탁, 스포츠의 상식과 같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상식의 아이러니에서 시작하여, 이념과 역사 정의의 상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20개의 '상식' 이야기를 통해 결국 상식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이라고 외침으로써 '희망'의 상식을 찾자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상식의 복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절실한 이즈음, 누구나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회원, 창비,  
2009. 5. 22. 출간,  
A5, 342쪽

이미 널리 읽히고 있어 소개하기가 쑥스러울 정도가 된 베스트 셀러. 이미 날카로운 칼럼들과 「칼을 쳐서 보습을(2002)」, 「헌법의 풍경(2004)」, 「평화의 얼굴

(2006)등을 통해 인권과 정의로움에 관한 알기 쉬운 글 쓰기로 정평 난 김두식 회원의 책이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법조의 구석구석을 인터뷰하고 그 생생한 목소리에 깊은 고민을 맛깔나게 버무리 깊은 인상을 남긴다.

부끄러운 법조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는 '객관적 비판' 뒤에, 그 누구보다 우리 법조가 바른 길을 가고,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애정도 함께 읽을 수 있다. 나아가 강준만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법조인을 욕하면서도 자기 자식은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까지 비추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금태섭 회원, 창비,  
2009. 6. 12. 출간,  
A5, 176쪽

창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직업안내서, 직업 탐색 보고서 시리즈 중에서 '변호사' 편을 금태섭 회원이 맡아 나왔다. 어른들이 읽는 책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덧붙여진 글과 말솜씨를 보여주었던 금태섭 회원의 입을 통해, '변호사가 과연 꿈꾸어 볼 만한 직업'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다.

# 민변 총회

글 \_성상희 회원 · 대구지부장

지난 4월 초순경에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올해 총회를 경북권에서 진행하기로 하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게으름을 피우다가 한참 뒤에 경북 군위에 있는

간디문화센터에 연락을 하여 물어보니 100명 정도가 회의도 하고 숙식과 뒤편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간디문화센터 대표로 있는 문창식 선생은 대구시민센터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자주 보고 있었고, 나는 간디센터에 비정기적 후원도

하고 있었으나 정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였다.

본부와 연락이 되어 본부 상근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장소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어 총준위에서 일단 총회 장소를 확정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다. 이후에는 본부와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빈틈없는 준비를 위하여 본부에서는 몇 번 간디센터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부의 역할에 대한 본부의 요청이 있었고, 처음에는 장소를 소개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 공동개최(?)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공동개최는 아니지만 대구지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일단 대구지부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야 한다는 것, 뒤편이 자리를 만들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 다음날 필요한 관광 일정을 준비하는 것 정도를 지부의 역할로 인식하였다.

5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총회의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 토요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침에 정기적으로 들르는 덕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는데, 역시 간디문화센터 이사이기도 한 신동민 원장이 눈이 벌개져서 노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이날부터 모든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 주 초에 백승헌 회장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회원들과 중앙집행위원들 중 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주셨다. 비상상황이라 시국에 대응해야 할 민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었고, 비록 주말이지만 주요한 시기에 민변 전체 집행부와 열성회원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기된 총회 장소를 수도권 인근으로 하는 것은 어떨겠느냐는 언급도 있었는데,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고 준비해 온 대구지부 회원들의 정성도 있어서 장소는 그대로 간디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회장님과 협의를 하였다.

뒤편이로 돼지고기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구 회원들의 참석을 점검하는 외에 각 지부 지부장들에게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로 오라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대구시민센터 집행위에서 자주 만나는 문창식 대표와 몇몇 사람들이 뒤편이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나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역시 간디센터의 이사이면서 대구시민센터 집행위원이고 유창리사이클링이라는 자원 재활용 업체 대표인 이상욱 선생이 마산의 해물을 주로 하고 삼겹살 등으로 안주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였다. 며칠 뒤 마침 대구시민센터 워크숍을 간디센터에서 진행하였고, 그날 저녁 식사 후 뒤편이에 마산에서 올라온 조개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총회 당일 뒤편이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었고, 이 정도면 전국에서 온 민변 회원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회가 임박하여 들으니 27일은 간디센터 개소 이래 가장 바쁜 날이었다. 간디문화센터는 원래 간디자유학교가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에 위치한 서경초등학교 폐교 자리를 인수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를

운영하다가 금산으로 이사를 가고 폐교 자리는 문창식 대표와 몇 사람이 함께 인수하여 도농을 연결하는 지역 문화센터로 새 단장을 하게 된 시설이다. 문창식 대표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으로 시작하여 대구지역 시민운동에 20여 년 간 헌신해 온 활동가그룹의 지도적 인물이었다.

농촌 재래장 살리기, 농촌 지역 다문화 가정의 상호 소통과 공동체 정착, 어린이들의 공동체 생활 경험 등 다양한 교육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공간이다. 더불어 지역 사회단체들의 수련회 등에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다. 이날 소보 장터 장날 행사가 오전에 있었고, 오후 3시에는 간디센터에 개관하는 음악당 개관기념 음악회가 진행되고, 오후 4시부터 민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구 회원들은 지부장, 사무국장과 전 지부장 송해익, 전 사무국장 남호진 회원이 함께 이동하여 3시 정도에 도착하여 음악회 자리에서 느긋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뒤편이 서빙을 총지휘할 이상욱 대표와 만나 몇 가지 점검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회원들이 타고 온 버스가 도착하여 간디센터가 분주해졌다. 회의공간에 다수 회원들이 들어가 4시부터 예정된 시국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음악회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즐기려고 음악당을 나오지 않고 있었다.

시국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일방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차후 권력교체를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간단한 저녁식사, 그리고 부산과 대구지부 회원들이 즉구시험을 하였는데 대구가 이긴 것으로 기억된다. 즉구 때문에 총회 시작이 약간 늦었는데, 총회 의사는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었다. 예년에 항상 대구지부 회원들이 의사진행이나 의안내용에 대하여

# 환경위 태안문제

글 \_이겨라 인턴



지난 9월 말에 민변과의 인연을 시작하여 가을, 겨울을 민변 식구들과 함께 보내고 어느 덧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고 제의를 받았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글솜씨도 없는데다가, 오랫동안 활동한 인턴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변론에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환경위원회 인턴 활동에 대해서 민변 회원 분들께도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인턴들끼리는 '태안작업'이라고 칭하기도 했었는데요. 5,6월호를 보신 분들은 삼성중공업 선박책임 제한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글을 읽으셨을 텐데, 저는 그동

안 인턴으로서 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민변 인턴으로서 첫 근무를 했던 날입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사무실도 낯설어서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조성오 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처음 뵙고,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 후 한 달 동안 나름의 적응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 10월 24일에 태안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중요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사고 이후 올해 우려했던 치어들이 모조리 다 죽어버렸고, 증거보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입증자료 수119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지만, 일정을 마치고 만리포 해수욕장에

발언을 많이 하여 집행부를 긴장하게, 혹은 피곤하게 하였는데 이날은 손님을 부르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강성 분위기(?)를 주도해 온 정재형 변호사가 안식년으로 자리에 빠져서 그런지 대구회원들의 발언은 별로 없었다.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에서 총회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9시를 훌쩍 넘어 있었다. 이미 간디센터 사람들이 두 개 불판을 깔고 피조개와 가리비를 굽고 있었다. 마산의 명물이고, 내륙인 군위나 대구에서는 싱싱한 조개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터였다. 1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아무리 구워내도 조개는 공급이 달리는 모양이었다.

분위기가 조금 익어 뒤풀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은 민변 회원들에게 소개하였다. 민변 대구지부는 식품구입비만 전달하고 느긋하게 있었는데, 조개와 삼겹살뿐 아니라 소주와 막걸리까지 준비해 온 이상욱, 간디센터 대표 문창식, 간디센터 이사이자 대구시민센터 집행위원인 주선국, 엄태수, 대구시민센터 사무처장 윤종화 씨 등이었다. 같이 어울려 막걸리도 함께 나누었다.

술이 한 순배 돈 다음 간디센터 사람들이 풍물을 들고 나와 한바탕 두드렸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한두 사람씩 잠자리로 들어가면서 자리가 정리되고 있었다. 원래 캠퍼터 목적으로 장작을 쌓아 불을 피웠었는데 조개에 끌린 사람들이 야외 파티장으로 모여들어 캠퍼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장작은 외롭게 타고 있었다.

전날의 숙취로 다음날 조금 무겁게 일어났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후 정리를 하고 먼저 서울행 버스를 환승하였다.

본부 회원들은 경북 북부의 명물 부석사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은 사람들이 각 지부 회원들인데, 전주와 대전 지부 회원들은 먼저 올라가고 방향이 같은 부산과 광주 회원들이 남아 대구회원들과 함께 인근 팔공산 삼존석굴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제2석굴암이라 불리는 삼존석굴은 군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의 하나로

서 평소에는 보전을 위하여 철문으로 봉쇄하고 있어 두어 차례 방문하였지만 한번도 바로 앞에서 보지 못한 문화재이다.

이날은 정말 운이 좋아 어느 절의 신도들이 단체 참배를 하는 관계로 철문을 열어두고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과 좌우 보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다. 불교에 조예가 깊은 김현익 변호사는 본부는 역시 아미타부처를 모신 부석사 무량수전을 방문하고, 우리는 제2석굴암을 방문하여 아미타불의 인연이 있다고 한마디 하였다.

제2석굴암을 돌아 조선 후기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한티성지를 지나쳐 팔공산을 군위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한티고개 정상 휴게소에서 차 한 잔을 하였다. 그냥 보내기가 아쉽다는 구인호 사무국장의 강력한 주창으로 휴게소에 들렀던 것이다.

광주, 부산 분들을 모두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약속이 있다고 하여 동행한 서울의 임성택 변호사를 배웅하고 총회 일정을 마쳤다.

수고하신 본부 임원들과 간사들, 대구 회원들, 그리고 도와 준 간디센터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렸던 일도 생각합니다.

만리포의 경우 고운 모래와 각종 서식생물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모래사장의 경우 엄청난 양의 모래를 퍼냄으로써 거의 사고 이전 상태에 가깝게 복구되었으나, 정상적인 서해의 모래사장갯벌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생물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sup>1)</sup> 이후에도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이번 기름유출사고의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확산방지와 사후처리

과정에 있어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부담을 회피하고만 있는 대기업의 한심한 모습과 시종일관 우왕좌왕으로 일관하는 정부, 그 와중에 '태안의 기적'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만을 강조하면서 이 거대한 불행의 본질을 덮고 흐지부지 넘어가려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의 태안 방문이 제가 할 일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0월 말부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sup>2)</sup> 청구관련 통계 작업을 시작해서 11월 말에 그동안 해오던 피해진술서 최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12,1월은 피해청구금액을 산정하여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신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2월에 신고서 출력 작업을 하였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에 제출을 마쳤다는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기 인턴활동이 끝나가는 무렵인 지난 2월 9일에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이 지난 1월 제출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조선 측의 책임을 선주상호보험 가입한도인 1,425억 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3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서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 만원으로 산정하여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하고,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 6000여 원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태안 주민들은 3월 30일 항고신청을 하였고, 저희 역시 즉시항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은 크게 수산과 비수산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요. 펀드 청구 작업은 맨손어업과 내수면어업을 합한 수산 부분만을 저희가 담당하였지만, 제한채권신고는 총 613건의 수산부분과 총 1700여건의 비수산 부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비수산 부분을 담당하신 황정화 변호사님과 전날 밤까지도 열심히 작업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4월 24일에 즉시항고를 마치고, 2월 9일 결정에 의해 5월 8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바빠졌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서산지원 제한채권신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산지원 제출 후에 서울중앙지법 제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한채권신고서와 제한채권자표를 함께 준비하고, 민변 사무실에서 인턴들이 수산 부분을 전담하여 편철작업까지 마무리하여 지난 6월 16일에 서울중앙지법 제한채권신고도 마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입니다. 수작업을 요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의 배려로 다른 인턴들도 많이 도와주었고, 자원봉사를 해 주신 고마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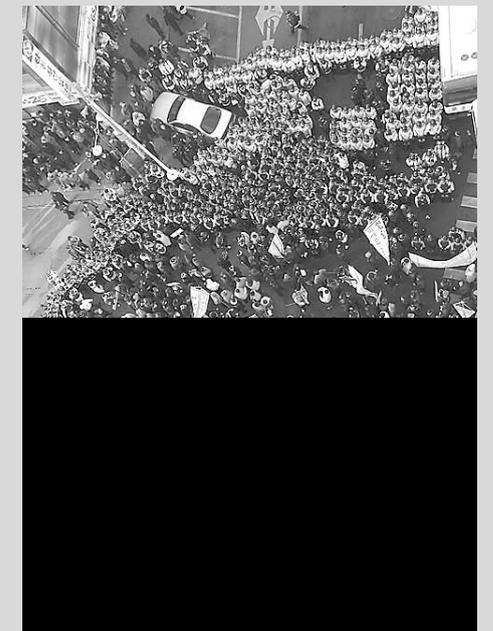
그래서 끝으로 저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민변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신 변호사님, 간사님, 조성오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조성오 위원장님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는 위원장님과 인턴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아서 인턴활동이 끝나더라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안 제한채권신고와 관련하여 내일처럼 열심히 도와준 2기 인턴 여러분들 특히, 계리 언니를 비롯한 S코드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같이 일했던 오늘도 추억이 되겠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1995년 7월 발생한 당시 국내 최대의 해양오염사고, LG칼텍스정유(주)의 기름을 적재하고 있던 씨프린스호는 7월 23일 태풍으로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덕포해안에 침몰했다.

2)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구성된 펀드로 선적된 기름의 유출사고의 경우, 유조선 보험사와 IOPC는 예인선, 부선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유조선과 접촉한 부선의 소유자(선주)나 가해선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의 보험사에 배상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한다.

아래 내용 전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minbyun.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09-07-23

2009년 7월 22일 국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의 언론관계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 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전광판에 찬반 결과가 공시되고 국회부의장이 그 결과에 따라 표결을 종료한다는 선포를 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하자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재투표에 부쳐 개정안 의결 선언을 하였다. 이 외에도 대리투표의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변은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하여 진행된 무효의 의결이고, 법안 역시 무효이다. ▲방송법안 1차 투표는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방송법안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그 투표결과는 무효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마저 깰거리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낱날이 보여주었다. 민변은 이번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고 권한쟁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성명** 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09-07-22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재적 미달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를 맡았다는 이윤성 국회의장은 스스로 표결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표결이 끝난 이상 재적 미달로 인한 부결을 선언하여야 했음에도 표결종결선언을 반복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하였으면 곧바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이며 나아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이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하였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성명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9-07-21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정부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노사 간에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지 공권력 투입이 아니다.

더구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할 경우 그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 위험이 초래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경찰관남용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사측의 인권침해행위도 사회적 용인한도를 벗어나고 있다.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전 직원 출근명령을 내려 노-노 갈등을 촉발시키는가 하면, 도장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16일부터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는데 이어 19일에는 의료진의 출입조차 가로막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측의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비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2009-07-16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교수를 내정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우리는 또 다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하여 후임 인권위원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 오랜 인권옹호 경력을 통해 인권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및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논의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현 교수는 그간 인권 관련 활동이 전무할뿐더러 어려운 시기 국내외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정자가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스스로도 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고백하는 형편이다. 종래 인권위를 계속 불편하게 여겨 온 정부가 무색무취한 사람을 세운 후 입맛대로 인권위를 통제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심을 증폭

시키는 인사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인권위에게 명실상부한 독립성과 인권지향성을 돌려주는 것만이 실추된 국제적 위상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임에도 국가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장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공개적인 절차와 기준을 확립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논 평**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총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2009-07-14**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안전문가인 천성관 서울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불거진 검찰민주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폭압적인 공안 통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중략)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경력과 아울러 중대한 도덕적 하자마저 지닌 천 후보자는 전국 검사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피의자로서 조사받아야 할 범죄혐의자라 생각한다. 아울러 국민이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지금 검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인사의 검찰총장 임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보다 충직한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인사를 포기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되새겨 검찰총장 후보자를 새로이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2009-07-10**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자신의 법개정 시도를 변명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변명 내용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회자될 만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변명 중 하나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우리의 선명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2004년 9월 노동부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며 기간제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2006. 11. 30. 국회 본회의에서 1분 만에 통과시킬 때까지 이 법은 비정규직을 2년만 사용하고 그 뒤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취지의 보호법이라고 강변하였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고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에도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이 되기 전에 기업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할 근거도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희가

비정규직법을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 기막힌 '내용은 2009년 7월 1일 해고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노동부가 한 말이 아닌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항간에 나도는 100만 해고대란설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만 해고대란설을 먼저 주창한 사람은 바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었다. 더 이상 노동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물불가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의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주기 바란다.

**논 평**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2009-07-08**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흔들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려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 뒤 인권위와 국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안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인권위 조직을 무려 21%나 축소하였다.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의장이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현하는 서한을 보내오고, 유엔 인권 최고책임자인 인권최고대표 또한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년 가까이 인권위를 지켜 오던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였

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직의 배경은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냉대 때문이었으며, 안 위원장은 단적으로 이를 '식물위원장'과 같은 신세라고 표현하였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임기를 성실히 마칠 것을 공언해 오던 안경환 전위원장의 사임을 보며 우리는 현 정부의 인권위 무시와 냉대, 독립성훼손이 극에 달하였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임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에 의한 임명방식은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위원장으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후임 인권위원장 임명 때부터 시행함으로써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 명**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조치 중단하라 2009-06-26**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년 6월26일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의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하여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발표했다.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이름의 시국선언은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미디어법 등 반민주악법 강행 중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한반도대운하 재추

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는 ①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특히 동법 제84조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③교원 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은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이래 일관되게 공무원에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역시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한편 교과부장관은 이미 십수년간 축적되어온 합리적 법률해석과 판례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교사들

의 시국선언을 금지되는 집단행위 내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무리하게 징계 및 형사 고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성명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 기자회견에 대한 불법체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9-06-26**

불과 얼마 전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마저 집시법을 적용하여 체포하였던 공권력의 만행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질주하고 있다.

6월 26일 11시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주최로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12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들이 공장을 나와 귀가하려던 조합원들의 신원을 확인한다면 서 둘러싼 후 이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기자회견을 위해 나와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장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체포하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수원 서부경찰서를 향의 방문하여 연행자 석방과 불법체포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신청하였다.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안하무인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불법적인 체포를 자행한 경찰기동대원 개개인과

현장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당국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성명서** **KBS 경영진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9-06-25**

재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랜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6월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보고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420명 중 331명은 자회사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달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8명 전원에 대하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KBS 경영진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최악의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략)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KBS 경영진이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이번 KBS 사태를 통하여 드러난 현행 비정규직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제2, 제3의 이랜드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 2009-06-18**

검찰은 오늘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하던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명료한 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빚은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반성이나 뉘우침 없는 검찰에 대해 법적 투쟁으로 명예를 지키겠다.”는 제작진의 뜻에 동참하며 이들에게 법적 조언과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성명서**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09-06-09**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통해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유예 방침도 이름만 바뀌었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행 유예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것이며, 유예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대량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불안에 있다.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내수경기가 진작될 리 없고, 우리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고착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유예 방침처럼 졸속·땀질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 시정방안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동논평**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총수 사익 위해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징계, 위법사실 1년 전에 확인하고도 형사재판 결과 기다려 형식적 제재로 눈가림 2009-06-04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현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비자금 관리를 주도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어제(3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이에 연루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형식적인 경징계로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취하는 '눈치보기'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서경석), 참여연대(대표 임종대)는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금융감독 기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중략)

법령에 의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금융감독당국의 책무는 공평무사한 시장 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 당국은 최소한의 신뢰를 잃었고 금융선진화를 논의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사익추구를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금융계열사와 금융기관들에 대해 형식적 제재조치로 사면해 준 금융감독 당국을 시장이 어떤 근거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 한국 금융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말았다.

# 정기구독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한 민변의 분석, 입법과 사법현안에 대한 입장, 민변의 활동, 회원들의 감칠맛 나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ttp://www.minbyun.org> 에서 구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료 : 1년 6회 발행 30,000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화 문의 : 02-522-7284

메일 문의 : [info@minbyun.org](mailto:info@minbyun.org)

